

프랑스법상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도입과 현황 및 지원체계

황재훈

프랑스 파리13대학교 법학박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변호사

GLOBAL LEGAL ISSUES

프랑스법상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도입과 현황 및 지원체계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CONTENTS

I. 서론	06
II. 프랑스법상 협약 도입 과정과 운영	07
III. 프랑스 장애인관련 법제의 현황	08
1. 장애의 개념	08
2. 협약의 주요조항별 관련 법률과 사례	09
IV. 감독 및 지원기구: 권리보호관	33
1. 권리보호관 제도의 배경	33
2. 권리보호관의 조직	34
3. 권리보호관의 장애인 권리보호	35
V. 결론 및 시사점	37
참고문헌	38
부록	39

요약

- 프랑스는 일찍이 2010년도에 UN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그에 부속하는 선택의 정서를 모두 비준하여, 국내법으로써 시행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에도 선택의정서 비준 절차가 막바지에 있으므로, 앞으로 협약국의 사례연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음.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프랑스의 사례와 제도가 국내에 소개된 비중이 적어, 이에 대한 사례와 법제를 간략히 살핌
- 우선 ‘장애의 개념’과 관련하여, 협약의 전문에서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것을 인정하고”라고 하여 장애가 사회적 개념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나, 사회적활동 및 가족법전 제L.114조는 이러한 사회적 개념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프랑스에서도 협약과 국내법의 장애의 개념 간에는 여전히 괴리가 존재함
- 대표적인 협약의 조항들을 살펴보면, 우선 협약 제5조(평등 및 비차별)와 관련하여, 형사법전 제225-1조 내지 제225-4조가 일반적인 차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225-1조 내지 제225-1-2조는 차별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고, 제225-2조는 각 차별행위에 따라 3년 내지 5년 이하의 징역과 45,000유로 내지 75,000유로의 벌금을 예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에 의한 차별에 대한 처벌특례는 제432-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협약 제9조(접근성)와 관련하여, 2014년 9월 28일부터 2021년 7월 1일까지 건축 및 주거법전 제111-7조가 사무실을 포함하여 공중에게 개방된 건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장애인의 주거용건물, 직장 및 대중접객시설에 대한 접근성 조치를 위한 기타 조항에 관한 1991년 7월 13일 자 법률 제91-663호」 제2조는 “대중의 통행에 사용되는 공로 또는 사도는 도로법전 제L.131-2조 및 제L.141-7조에 쫓아 데크레(Décret)로 정한 기술적 요소들에 적합한 장애인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정비되어야 한다”고 하여 도로에 대한 접근성을, 운송법전 제L.1111-1조 및 제L.1112-1조는 대중교통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장애인의 평등한 권리와 기회, 참여 및 시민권에 관한 2005년 2월 11일 자 법률 제2005-102호」 제47조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동법률 제78조는 전화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었으며, 파기원 2006년 6월 20일 자 판결은 영화관 운영자에 대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접근을 허용하지 아니한 조치가 형법전에 따른 차별금지위반행위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파기원 2015년 12월 15일 자 판결 제13-81586호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 대하여 이륙 전

동행자가 없다는 이유로 기내에서 내리도록 한 항공사에 대해서 차별행위를 인정했음. 제9조의 특칙이라 할 수 있는 제13조(사법에 대한 접근)와 관련하여, 파리 항소법원은 수화 통역사를 대동하게 해달라는 실어증이 있는 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였다가, 국사원으로 부터 재판이 취소된 바 있음

- 협약 제22조(사생활의 존중)와 관련하여, 2016년도 발간된 ‘취약한 성인을 위한 법적보호 (Protection juridique des majeurs vulnérables)’에 관한 권리보호관 보고서에서, 시설에 거주 중인 장애인의 방에 감시카메라의 설치가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우려가 큼을 지적한 바 있음
- 협약 제29조(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와 관련하여, 권리보호관은 시각장애인의 투표의 비밀성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신청을 접수하여 2011년 12월에 협회와 선출공무원, 전문가와 내무부 장관 대리가 참석한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2년 1월 12일 자 권리보호관 결정 제MLD-2012-2호를 통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음
- 프랑스는 협약 제33-2조에 따라, 권리보호관에게 협약준수에 관한 감독권을 부여했음. 권리 보호관은 헌법 제71-1조상에 그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권리보호관에 관한 2011년 3월 29일 자 조직법률 제2011-333호」에서 규정을 두고 있음. 권리보호관에 대한 소는 무상이며, 직권으로도 사건을 진행할 수 있음. 2019년도에 권리감독관에게 접수된 사건은 총 103,066건이며, 99,095건에 대해서 다룬 바 있음. 2019년도에 권리보호관이 차별을 이유로 접수한 사건 중에서 장애와 관련된 차별은 1,237건으로 전체 차별 사건 중 22.7%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음

I. 서론

- UN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la Convention relative aux droits des personnes handicapées, 이하 ‘협약’이라 한다)」은 2006년 12월 UN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조약이며, 우리나라는 2007년 3월 협약에 서명함
- 권리나 존엄성을 침해받은 개인과 단체가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개인진정제도와 협약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직권조사제도가 규정된 선택의정서(le Protocole facultatif)의 비준이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프랑스는 2010년도에 협약과 그에 부속하는 선택의정서를 모두 비준하여, 국내법으로써 시행하고 있음
- 프랑스에서도 협약이 도입된 지 10년이 넘어가면서 안정적으로 제도가 자리잡고 있으나, 계속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법상 흠결도 지속적으로 확인됨
- 우리나라에서 선택의정서가 비준되면, 권리를 침해받은 장애인들이 국제기구에 권리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됨
- 이러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협약국들의 여러 사례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이 진행되어 있어야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즉, 권리구제에 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약국의 사례들이 국내에 잘 소개될 필요가 있음¹⁾
- 영어권 국가의 사례들은 비교적 잘 소개된 바 있으나, 제2외국어권 국가의 사례, 특히 프랑스의 사례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미진한 상태임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프랑스의 협약의 도입과정을 살펴보고, 법률과 구체적인 사례를 이어 살펴본 후,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조직인 권리보호관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1) 황재훈 외 3인, 국내 장애인 권리구제 관련법과 UN CRPD 선택의정서의 개인진정제도 비교를 통한 국내법 개정 연구, 한국 장애인연맹(DPI), 2021, p.37.

II. 프랑스법상 협약 도입 과정과 운영

- 2006년 12월 13일 UN에서 개최된 제61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협약과 선택의정서 채택
- 2007년 3월 30일 프랑스 및 유럽연합이 협약에 서명
- 2008년 9월 23일 프랑스가 선택의정서에 서명
- 2009년 11월 26일 유럽연합위원회에서 협약을 승인
- 2009년 12월 31일 프랑스 하원은 협약과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승인하는 법률을 채택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승인하기 위한 2009. 12. 31.자 법률 제2009-1791호

유일한 조문 ① 본 법률(2)에 첨부된 내용과 같이 2007. 3. 30. 뉴욕(New York)에서 서명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선택의정서와 함께)의 비준을 승인한다.

② 본 법률은 국가의 법률로써 시행된다.

파리(Paris)에서, 2009. 12. 31.

공화국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총리: 프랑수와 필롱(FRANÇOIS FILLON)

유럽 및 외교부 장관: 베르나르 쿠슈너(BERNARD KOUCHNER)

- 2010년 2월 18일 프랑스에서 협약과 선택의정서에 대한 비준
- 2010년 3월 20일 프랑스에서 협약과 선택의정서의 시행²⁾
- 2010년 12월 23일 유럽연합에 의한 협약의 비준
- 2011년 1월 22일 유럽연합에서 협약의 시행

2) 이에 따라 최초보고서가 2012년 3월 20일까지 제출되었어야 했는데, 2016년 5월 18일에 이르러서야 제출되어 많은 비판이 있었다. Guide, *La Convention relative aux droits des personnes handicapées, Défenseur des droits*, 2016, p.8.



III. 프랑스 장애인관련 법제의 현황



- 프랑스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의 평등, 참여 및 시민권에 관한 2005년 2월 11일 자 법률 제2005-102호」³⁾ 외에도 많은 법률이 장애인의 차별을 철폐하고 그들의 권리를 증진 시키기 위한 입법이 이뤄졌음
- 일련의 입법에도 불구하고, 권리감독관은 2017년도 보고서에서 프랑스의 “느림문화 (culture de retard)”를 비판하며 실질적인 장애인의 권리보장이 지연되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고, 2019년 1월 8일 자 국제기구의 특별보고서에서도 협약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는 의견이 있음⁴⁾

1. 장애의 개념

- 협약의 전문에서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것을 인정하고”라고 하여 장애가 사회적 개념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
- 그럼에도 프랑스의 법률 제2005-201호로부터 입안된 사회적활동 및 가족법전 제L.114조는 이러한 사회적 개념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괴리가 존재함⁵⁾

사회적활동 및 가족법전 제L.114조	협약 제1조
본 법률에서 장애는, 하나 이상의 신체기능, 감각, 정신, 인지 또는 정신의 상당하고, 지속적이거나 영구적인 악화, 다중장애 또는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하는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사람이 그의 환경에서 겪는 모든 활동의 제한 또는 사회생활에 대한 참여제한을 말한다.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3) Loi n° 2005-102 du 11 février 2005 pour l'égalité des droits et des chances, la participation et la citoyenneté des personnes handicapées (1).

4) Rapport de visite en France de Madame Catalina Devandas-Aguilar, *Rapporture spéciale sur les droits des personnes handicapées*, 8 janvier 2019.

5) Rapport, *La mise en oeuvre de la Convention relative aux droits des personnes handicapées(CIDPH)*, Défenseur des droits, 2020, p.11.

- 협약은 ‘상호작용’이라는 장애의 성격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음에도, 법률에서는 ‘문제를 이유로 환경에서 제약을 겪는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환경 역시 장애의 원인이 된다는 관점을 간접적으로 배제하고 있음.⁶⁾ 이러한 태도는 2006년 7월 11일 자 유럽사법재판소의 *Chacón Navas* 사건에서의 태도와 유사함.⁷⁾ 이는 장애를 겪는 각 개인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측면을 강조한 시각임

2. 협약의 주요조항별 관련 법률과 사례

(1) 제5조 평등 및 비차별

- 협약 제5조제1항은 “당사국은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그리고 법 아래 평등하며, 법이 인정한 동등한 보호 및 동등한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다”라고 적고 있고, 제5조제2항은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이유에 근거한 차별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라고 적고 있으며, 제5조제1항 및 제2항은 직접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됨⁸⁾
- 이와 관련해서 「2008년 5월 27일 자 법률 제2008-496호 차별철폐 분야에서 유럽 공동체법에 대한 적응을 위한 기타조항⁹⁾이 주요 입법사례로, 국사원의 2016년 6월 20일 자 제383333호가 대표적인 재판례¹⁰⁾로 꼽힘
- 형사법전 제225-1조 내지 제225-4조가 일반적인 차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225-1조 내지 제225-1-2조는 차별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고, 제225-2조는 각 차별행위에 따라 3년 내지 5년 이하의 징역과 45,000유로 내지 75,000유로의 벌금을 예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에 의한 차별에 대한 처벌특례는 제432-7조에서 규정함¹¹⁾

6) 이는 우리나라 법에서도 유사하다. 예컨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은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7) D. Maëlle, *La non-discrimination en droit des contrats*, Nouvelle Bibliothèque de Thèses, Vol. 172, Dalloz, 2018, p. 334.

8) 해당규범이 직접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 이해관계자는 해당 조항을 독립적인 재판규범으로 인용할 수 있다. 즉, 직접적 효력을 가지는 규범은 실제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이다. 이에 반해 해석적 효력만을 가지는 규범은 직접적용될 규범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9) LOI n° 2008-496 du 27 mai 2008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d'adaptation au droit communautaire dans le domaine de la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1).

10) Conseil d'État, 7ème - 2ème chambres réunies, 20/06/2016, 383333.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1967년도에 입국한 원고는 한 차례 추방명령의 대상이 된 후 2004년 이후로 가족 관련 체류비자를 갱신받아 오다가, 2010년도에 이르러 영주권(10년 장기체류증)을 신청하였으나 영주권 발급을 위한 소득수준의 미달을 이유로, Bas-Rhin 경시청으로부터 2010년 11월 9일 자 거절처분을 통보받았다. 원고는 장애로 인하여 80%의 노동력 상실상태에 있었고, 이에 따라 최저소득수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원고는 해당 최저소득수준 기준이 장애인을 차별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국사원의 결정으로 원심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었다.

11) 관련 조문의 번역은 법무부, 프랑스 형법(2008. 11.)을 참조하면 된다. <http://www.moj.go.kr/bbs/moj/175/423297/artclView.do>.

- 형사법전 제225-3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장애인의 노동권과 관련한 주요 규정임

제225-3조 ① 전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건강상태 또는 장애와 관련한 차별 중에서, 노동법전 제2권 제4편에 따라 의료적으로 확인된 부적합성이나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법령에 근거하여 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의 사유로 차별하는 경우.

- 협약 제5조제3항은 “당사국은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절차를 취한다”라고 적고 있고, 제5조제4항은 “장애인의 사실상 평등을 촉진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는 이 협약의 조건하에서 차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라고 적고 있으며, 제5조제3항 및 제4항은 간접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됨
- 관련 지침으로는 2000년 11월 27일 자 유럽연합지침 2000/78/CE가 있으며,¹²⁾ 노동법전 제L.5213-6조가 협약을 구체화한 조항으로 평가됨

노동법전

제L.5213-6조 ① 장애인 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평등원리의 존중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주는 구체적인 상황의 필요에 따라 제L.5212-13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상의 노동자를 위하여 그들의 자질에 따른 채용 또는 채용유지, 직업수행 또는 훈련의 진행 또는 면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② 고용주는 장애인 노동자의 업무에 소프트웨어 설치를 비롯한 그들의 직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보장한다. 마찬가지로 고용주는 장애인 노동자의 재택근무를 보장한다.

③ 이 조치들은 고용주에 의한 전부 또는 일부의 비용지출로 상쇄할 수 있는 제L.5213-10조에 따른 지원을 고려하여 그 실행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크지 않은 때에 적용한다.

④ 제1항상의 조치 이행의 거부는 제L.1133-3조상의 차별이 성립할 수 있다.

(2) 제7조 장애아동

- 협약 제7조제1항은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고 적고 있고, 이는 해석적 규정으로 평가됨
- 협약 제7조제2항은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는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적고 있고, 제7조제3항은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12) https://www.eumonitor.eu/9353000/1/j4nvk6yhcbpeywk_j9wik7m1c3gyxp/vitgbgi71h5h.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자신의 견해(이 견해에 대하여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된다)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갖고,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고 적고 있음. 제7조제3항은 직접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참고로 아동의 최대이익과 관련해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internationale des droits de l'enfant)」 제3-1조가 국사원과 파기원¹³⁾에 의해 직접적으로 적용된 바 있음

[파기원 제1 민사부, 2005. 5. 18. 제02-20,613호]

프랑스 공화국
프랑스 인민의 이름으로

프랑스 인민의 이름으로 파기원 제1민사부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

유일한 쟁점에 관해 개정 민사소송법전 제1015조에 의거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990. 1. 26.자 뉴욕협약 제3-1조 및 제12-2조와 민법전 제388-1조 및 민사소송법전 제338-1조 및 제338-2조를 고려하여,

살피건대, 모든 아동에 관한 재판에 있어, 아동의 최대이익은 핵심적인 고려요소이고, 식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 심리가 요청되면,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심지어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항소이유로 주장된 때에도,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를 기재한 결정이 따르지 않고는 그에 대한 심문을 배제할 수 없다.

살피건대, 그의 모친의 집인 미국에서 거소를 두고 있는 1990. 8. 31.생 아동인 갑은 부에 의해 심리가 계속 중인 항소법원에 통지를 통해 거소가 변경되었다.

원심은 아동에 대한 청문 신청에 대해서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 아동에 대한 최대이익원리의 핵심적 고려 및 그의 권리는 아동의 신청을 고려하도록 함에도, 원심은 이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02. 9. 30.자로 당사자 사이에 렌느(Rennes)항소법원에 의해 내려진 결정에 대한 모든 조항은 파기하고 취소한다. 이에 따라, 이 점에 관하여 사건과 당사자들이 상기 판결 이전에 있었던 상태로 되돌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앙제(Anger)프로방스항소 법원으로 환송한다.

13) Cour de Cassation, Chambre civile 1, du 18 mai 2005, 02-20.613, Publié au bulletin.

- 법적 절차에서 아동의 참여에 관한 보장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CIDE: Convention internationale des droits de l'enfant) 제12조제2항 역시 앞서 살펴본 2005년 파기원 판결, 2008년 국사원 판결¹⁴⁾에 의해 직접 적용된 바 있음. 아동의 표현할 권리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3조 역시 2011년 국사원 판결¹⁵⁾에 의해 직접적으로 적용된 바 있음

(3) 제9조 접근성

- 협약 제9조제1항은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며, 가호에서는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외 시설”을, 나호에서는 “정보, 통신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를 그 예시로 열거하고 있음
- 협약 제9조제2항은 접근성과 관련하여 제1항과 별개로 가호 내지 아호¹⁶⁾에서 접근성 증진을 위한 지침 마련 및 감독, 훈련, 인력양성 및 보조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협약국에게 부과하고 있음
- 협약 제9조는 각 당사국에게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권고하는 해석적 규정임
- 협약 제9조와 관련된 프랑스 국내법으로는 현재는 폐지되었지만, 2014년 9월 28일부터 2021년 7월 1일까지 건축 및 주거법전 제111-7조가 사무실을 포함하여 공중에게 개방된 건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었음¹⁷⁾

14) CE, 2e et 7e SRR, 27 juin 2008, n° 291561.

15) Conseil d'État, 5ème et 4ème sous-sections réunies, 16/03/2011, 334289, Publié au recueil Lebon.

16) 가.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표하고 그 이행을 감시할 것
나.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
다.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훈련을 제공할 것
라.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공공표지판을 설치할 것
마.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자, 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사람과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를 제공할 것
바.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할 것
사.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 및 체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의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을 초기 단계에서 촉진할 것

17) Loi n° 91-663 du 13 juillet 1991 portant diverses mesures destinées à favoriser l'accessibilité aux personnes handicapées des locaux d'habitation, des lieux de travail et des installations recevant du public.

- 「장애인의 주거용건물, 직장 및 대중접객시설에 대한 접근성 조치를 위한 기타 조항에 관한 1991년 7월 13일 자 법률 제91-663호」 제2조는 “대중의 통행에 사용되는 공로 또는 사도는 도로법전 제L.131-2조 및 제L.141-7조에 쫓아 테크레로 정한 기술적 요소들에 적합한 장애인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정비되어야 한다”고 하여 도로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함
- 운송법전 제L.1111-1조 및 제L.1112-1조는 대중교통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음
- 「장애인의 평등한 권리와 기회, 참여 및 시민권에 관한 2005년 2월 11일 자 법률 제2005-102호」 제47조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동법률 제78조는 전화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함

**장애인의 평등한 권리와 기회, 참여 및 시민권에 관한
2005. 2. 11.자 법률 제2005-102호**

제47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이들에 의존하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온라인 통신서비스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온라인 공공 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접근방법, 내용 및 상담의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전자형식의 정보에 적용된다. 인터넷 접근성에 대한 국제적인 권고 사항은 공공 통신서비스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③ 국사원의 테크레는 전자행정개발국(Agence pour le developpement de l'Administration Eletronique)이 정한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접근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기존의 사이트에 대한 적용의 성격과 3년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그 시행기한 및 이 접근성 실행에 관한 미준수에 대해 부과될 제재를 구체화한다. 테크레는 또한 온라인 공공 통신서비스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교육에 관한 방법을 정한다.

제78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을 대표하는 조직 및 공역무를 담당하는 사인과의 관계에서 청각장애를 겪는 자는 실시간 서면 번역이나 법령으로 정하는 방식과 기간에 따라 언어나 소리에 대한 시각화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채택된 통신조치는 특히 서면 문자화 또는 프랑스어 수화 통역 또는 약호화 등을 예정할 수 있다.

③ 테크레는 청각장애가 있는 자의 긴급전화 서비스 접근방식 역시 예정이다.

- 파기원 2006년 6월 20일 자 판결은 영화관 운영자에 대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접근을 허용하지 아니한 조치가 형법전에 따른 차별금지위반행위라고 판결한 바 있음.¹⁸⁾ 이 재판례에 따라,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접근을 거부한 영화관에 대해서도

18) Cass. crim, 20 juin 2006, pourvoi n° 05-85.888.

차별행위라는 권리보호관의 유사 결정례가 있음.¹⁹⁾ 같은 이유로, 헬스장에 대하여 차별행위를 인정한 권리보호관의 결정례도 있음²⁰⁾

- 파기원 2015년 12월 15일 자 판결 제13-81586호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 대하여 이륙 전 동행자가 없다는 이유로 기내에서 내리도록 한 항공사에 대해서 차별행위를 인정한 사례가 있음. 제3자 승객이 기내에서 동행자가 되어줄 것을 제안하였지만, 탑승 수속 시에 동행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공사는 동행 제안자를 동행자로 인정하지 않았음²¹⁾

(4) 제10조 생명권

- 협약 제10조는 “당사국은 모든 인간이 천부적인 생명권을 부여받았음을 재확인하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러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적고 있으며, 제10조는 직접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됨
- 프랑스민법전 제16-1조는 “각자는 자신의 신체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율하고 있음
- 파기원은 페루쉬(Perruche)라는 장애인이 의료인에 대해 자신의 태아장애진단에 과책이 있었음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인용하였음. 판결에 대한 반발로 ‘반페루쉬법’이 입법되었는데, 제1조는 “누구도 자신이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여 선천적장애인의 의료시설 혹은 보험사에 대하여 선천적 장애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제한하고 있음. 이 내용은 사회활동 및 가족법전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제114-5조에 위치하는데, ‘누구도 자신의 출생의 사실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지만, 의료상 과책으로 인하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는 의료과책행위 혹은 적절한 조치의 부재가 직접적으로 그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장애를 악화시킨 경우에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전문가 혹은 의료기관의 명백과책으로 임신기간 중에 드러나지 않았던 장애아가 태어난 경우에는 부모 역시 자신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²²⁾
- 교통사고로 인해 2008년도 전신마비 상태에 있었던 뱅상 람베흐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 (droit à mourir dans la dignité)를 주장하며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19) Décision du Défenseur des droits n°MLD/2012-46.

20) Décision du Défenseur des droits n°MLD/2012-117. 이는 협약 제30조(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와 관련 있는 결정이다.

21) Cass. crim, 15 déc. 2015, pourvoi n° 13-81.586.

22) 황재훈, “프랑스법상 과책과 민사책임의 관계”, 『저스티스』 통권 제183호, 한국법학원, 2021, p.229.

프랑스 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음.²³⁾ 2011년 6월 벨기에의 의료시설에서 그는 “최소한의 의식상태”에 있으며,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명함. 2013년도까지 수많은 물리 치료 및 재활 치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 의료진은 처 레이첼 람베흐(Rachel Lambert)와 상의하여 임종에 관한 레오네티(Leonetti) 법률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 절차에 착수하였으나, 보수적인 카톨릭 신자였던 뱅상 람베흐의 부모가 이를 반대하여, 람베흐 사건으로 떠오름. 2014년 1월 의료진은 재차 레오네티 법률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했으나 뱅상 람베흐의 부모는 이 결정에 대해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국사원은 재차 전문가 감정을 시행함. 4개월 후, 환자가 비가역적 상태라는 전문가의 보고서에 따라 국사원이 치료 중단을 승인하자, 환자의 부모는 유럽인권재판소(CEDH)에 항소함

(5)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 협약 제13조제1항은 “당사국은 장애인이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라고 적고 있으며, 이어 제13조제2항은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하여 사법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장려한다”라고 적고 있으며, 제13조제1항은 간접적 효력을 가지는 규정으로, 제13조제2항은 해석적 규정으로 평가받음
- 협약 체결국은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사법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함. 프랑스의 경우, 협약 시행 이전인 2005년도부터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등의 재판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 법률을 마련한 바 있음

장애인의 평등한 권리와 기회, 참여 및 시민권에 관한 2005. 2. 11.자 법률 제2005-102호

- 제76조** ① 행정, 민사 및 형사 법원에서 모든 청각장애인은 그가 선택한 적절한 소통수단을 누릴 수 있다. 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② 상황에 따라, 시각장애인에게 시행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문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 ③ 실어증이 있는 자는 언어의 전체 또는 부분상실과 관련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그가 선택한 자 또는 전문가와 법정에서 동행할 수 있다.

-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러한 법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파리 항소법원은 수화 통역사를 대동하게 해달라는 실어증이 있는 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였다가, 국사원으로부터 재판이 취소된 바 있음

23) 르몽드(Le monde)지, 2019. 5. 5.자 기사, “Affaire Lambert: la France n’est « pas tenue » par l’avis du comité de l’ONU” 참조. https://www.lemonde.fr/societe/article/2019/05/05/affaire-vincent-lambert-un-comite-de-l-onu-demande-le-maintien-des-soins_5458362_3224.html.

[국사원 2019. 3. 15. 결정]

소송에 대한 국사원 판결

제1부와 제4부의 합동소송부는 제1재판부는 소송과 제1부의 보고서에 대하여,

2019. 2. 22. 변론기일, 2019. 3. 15. 선고.

다음의 절차를 살피건대,

같은 파리행정법원에 장애인주차허가 신청을 거절한 2016. 7. 5.자 거부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요구를 기각한 일드프랑스(Ile-de-France) 파리 경시청의 2016. 10. 25.자 결정과 2017. 1. 17. 이 기각을 확인하는 결정들을 취소하기 위하여 파리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파리행정법원은 2017. 4. 4. 제1620895호 결정으로 그 청구를 기각했다.

2017. 9. 28. 국사원에 소송부처에 접수된 상고를 통해, 같은 국사원에 대하여,

1.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다른 증거 등을 살피고,

다음은 참조하여,

- 2005. 2. 11.자 법률 제2005-102호
- 행정절차법(CJA)

공개변론을 거친 후,

- 신청인의 변호사 Arnaud Skrzyerbak의 신청서,
- 보고관 Rémi Decout-Paolini의 답변서,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건대,

1. 절차의 대심성 원칙 및 방어권을 고려하면,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소송당사자는 변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를 익힌 사람이 동행하거나, 그와의 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장치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심리에 출석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장애인의 평등한 권리와 기회, 참여 및 시민권에 관한 2005. 2. 11.자 법률 제2005-102호」 제76조제1항은 “행정, 민사 및 형사 법원에서 모든 청각장애인은 그가 선택한 적절한 소통수단을 누릴 수 있다. 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제76조제1항으로부터 법원은 변론에 출석한 자에게 그의 청각장애로 인해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제공하여야 할 책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는 원칙적으로 법원 재판의 부적합을 의미한다. 이 원칙과 다른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변론 중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변론 직후에 메모를 제시할 가능성을 박탈되지 않았음이 증명되어야만 한다.

2. 파리행정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따르면, 중대한 선천성 난청을 앓고 있는 갑은 2017. 3. 18. 도착한 편지를 통하여 그의 청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2017. 3. 31. 변론기일에 수화통역사 1인의 참석을 신청한 바 있다. 2017. 3. 20.자 편지를 통하여 원심 행정법원은 그의 전부청구를 기각하며 갑에게 그의 선택하에 통역을 보장할 능력이 있는 자를 대동하도록 일부 허용을 통지했다. 갑은 적시에 요구했던 수화통역사 출석의 혜택을 받지 못했고, 변론에서 그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상실했다. 이로써 원심행정법원은 2005. 2. 11.자 법률 제76조제1항을 위반하였고, 원심판결은 위법을 면할 수 없다.

3. 이상에서 2017. 4. 4.자 파리행정법원의 판결을 파기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취소의 원인이 될 만한 불법이 충분하므로, 항소의 다른 이유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

주문

제1조 2017. 4. 4.자 파리행정법원의 판결은 취소한다.

제2조 사건을 파리행정법원으로 환송한다.

제3조 본 판결은 갑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한다.

등본은 법무부 장관에게 송부한다.

- 2005년도 법률은 다른 형태, 특히 지적 결핍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절차에 관한 규정이 쉽게 읽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없었음²⁴⁾
- 협약 제9조의 접근성은 건물에 대한 접근성도 포함하며, 특히 사법기관의 건물에 접근이 문제될 시에는 협약 제13조가 규정하는 사법에 대한 접근권이 우선적으로 고려됨
- 법정에 대한 접근이 장애로 인해 좌절된 변호사의 청구에 대해서 국사원은 2010년 재판에서 국가에 대하여 장애인 변호사의 법정 접근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결정하였음²⁵⁾

24) Rapport, *La mise en oeuvre de la Convention relative aux droits des personnes handicapées(CIDPH)*, Défenseur des droits, 2020, p.35.

25) Conseil d'État, Assemblée, 22/10/2010, 301572, Publié au recueil Lebon.

[국사원 전원합의체 2010. 10. 22.자 결정 제301572호]

프랑스 공화국
프랑스 인민의 이름으로

2007. 2. 13. 및 같은 해 5. 14. 국사원 소송사무국에서 접수된 갑이 제출한 상고요지와 상고이유보충서에 따르면, 갑은 국사원에 다음 각 항을 청구한다.

제1항 한편으로, 릴(Lille) 행정법원이 차별을 원인으로 한 150,000유로의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의 국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다른 한편으로, 행정재판법전 제L.761-1조에 따른 청구를 기각한 2005. 4. 5. 판결의 취소를 구한 항소를 기각한 두에(Douai) 행정항소법원의 2006. 12. 12. 판결을 취소한다.

제2항 국가에게 손해배상으로써 150,000유로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제3항 국가에게 행정재판법전 제L.761-1조에 따라 3,000유로의 금액을 부담하게 하라.

기타 문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뉴욕 국제규약,
2000. 6. 29.자 유럽위원회 지침 제2000/43/CE,
2000. 11. 27.자 유럽위원회 지침 제2000/78/CE호,
사회적활동 및 가족 법전,
건축 및 주거 법전,
1971. 12. 31.자 법률 제71-1130호,
2004. 12. 30.자 법률 제2004-1486호, 특히 제13조,
2005. 2. 11.자 법률 제2005-102호,
2008. 5. 27.자 법률 제2008-496호,
2006. 5. 17.자 데크레 제2006-555호,
행정재판법전을 고려하여,

공개변론을 거친 후,

사실함에 제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살피건대, 갑은 1976년부터 변호사 직업을 수행해 왔으며, 2001. 5. 사고 이후에 악화된 운동 장애를 앓고 있고, 이로 인해 갑은 이 후로 스스로 계단을 오르지 못하며, 주로 휠체어에 의지하여 이동하고 있다. 갑은 베뉘느(Béthune) 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고, 두에(Douai) 항소법원의 관할 지역에 일부 법원건물에 대해 그의 접근을 위한 조치가 없거나 불충분한데서 기인하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2005. 4. 5.자 판결로, 릴행정법원은 이러한 사실로부터 갑이 국가에 대하여 150,000유로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했으며, 2006. 12. 12. 두에행정항소법원은 그 항소를 기각했으며, 이에 갑이 이 판결을 파기하기 위하여 상고했다.

다른 항소이유를 검토할 필요 없이,

국제 및 유럽 조약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법률을 채택한 사실로부터 발생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기각한 판결을 비난하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첫째로, 고용과 노동에서의 평등한 처우를 촉진하기 위한 2000. 11. 27.자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제2000/78/CE호 제2조에 따르면, 1. (...) / 2. 제1호를 위해 / (...) / (b) 중립적으로 보이는 규정, 기준 또는 관행이 어떤 종교나 신념, 장애, 연령 또는 성적취향을 가진 자에게 개별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때, 간접적 차별이 발생하나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i)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고용주 또는 동 지침이 적용되는 모든 사람이나 또는 조직은 그러한 조항, 기준 또는 관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제5조상의 원리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들을 국내법에 쫓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 제3조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1. 연합에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본 지침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모든 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에 관해 적용된다. / a) 고용, 자영업 또는 노동에 관한 접근 조건 (...) / (...) / c) 고용 및 작업의 조건 (...) / (...);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제공 제5조는, 장애인에 대한 평등 대우 원칙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이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상황의 필요에 따라 고용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애인이 직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직업을 행사하거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없는 한 훈련을 생략하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제18조에 따르면, 회원국은 늦어도 2003. 12. 2.까지 이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법령과 행정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 /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국은 연령과 장애에 기반한 차별과 관한 본 지침의 실행을 위하여 2003. 12. 2.부터 3년의 추가기간을 포함, 총 6년의 기간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즉시 이를 통보한다. (...).

살피건대, 둘째로, 장애인의 평등한 권리와 기회, 참여 및 시민권을 위한 2005. 2. 11. 법률로 만들어진 건축 및 주거법전 제111-7-3조의 조항은, 대중이 출입하는 기존시설은 대중에게 개방된 부분에 대해서 모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는 각 장애에 적합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 국사원의 데크레는 이 시설들에 대하여 유형과 범주에 따라 제L.111-7조가 예정하는 접근성에 관한 요구사항 및 장애인에 대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급부를 정한다. (...) 대중이 출입하는 기존시설은 시설의 유형과 범주에 따라 「장애인의 평등한 권리와 기회, 참여 및 시민권을 위한 2005. 2. 11.자 법률 제2005-102호」가 공포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사원이 데크레로 정하는 기한 내에 이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 이 법률조항의 적용에 있어, 「대중에게 개방된 기관 및 시설의 접근성 및 건축 및 주거 법전의 수정에 관한 2006. 5. 17.자 데크레」는 2015. 1. 1.자를 기존기관에 대해서 접근성을 갖추어야 하는 기한의 종기로 정했다.

살피건대, 끝으로, 「특정 법조 및 법원 직업의 개혁에 관한 1971. 12. 31.자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사법의 조력인(auxiliaire de justice)이다.

살피건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성격의 과책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기각함에 있어, 원심은 갑이 2000. 11. 27.자 지침 제2000/78호의 특정 쟁점을 도입한 2005. 2. 11.자 법률로부터 만들어진 건축 및 주거법전 제L.111-7-3조의 규정에 관한 과책성 위반을 원용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건축 및 주거법전의 제L.111-7-3조의 규정이 정하는 기간 및 기존기관의 출입을 가능하도록 2006. 5. 17.자 데크레가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지침 제2000/78호가 2003. 12. 2.에 적용되지 않았으며, 가사 이 날짜로부터 적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10년의 기간은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있어, 지침 제2000/78호가 국가에게 장애인 변호사가 그의 직업을 수행하는 사법 공역무에 관한 건물에 대하여 그러한 의무를 부과시키지않는 것을 살피야 하는데, 이를 긍정하는 경우에, 건축 및 주거법전 제L.111-7-3조의 조항이 이 지침의 쟁점을 수용함으로써 국가는 동 지침으로부터 10년의 기간 이내에 공중이 출입하는 기관에 대해 장애인의 접근을 허용하는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존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두에행정항소법원은 법적인 오류를 범하였다. 원심은 단지 기존 기관의 접근성을 실행하기 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국가가 법원건물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즉 법원 건물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점진적 개선을 하여야 할 의무에도 불구하고 부작위에 의한 과책이 있는지 살펴봄이 없이 건축 및 주거법전 제L.111-7-3조의 규정을 위반한 과책이 있다는 주장을 기각하였으므로 두 번째 법적인 오류를 범하였다.

공직에서의 평등권을 해친 국가의 무과실 책임을 기각하는 판결을 비난하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은 행정항소법원에서 주장한 지역 법원의 부적절함은 그에게 공직에서의 평등을 깨뜨린 국가의 무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일으켰고, 지역 법원의 갑의 장애에 대한 부적절함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는 중대하고 특별하여 일반적으로 용인해야 하는 정도를 넘어선 부담이므로 국가의 무과실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갑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여러 법원의 부적절함이 갑을 힘들게 하지만, 그렇다고 직업을 이어가는 것을 막지는 않으며, 그의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법당국은 당사자가 겪는 어려움에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갑이 주장하는 금전적·정신적 손해는 공직의 기회 앞에서의 평등을 깨뜨린 것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비정상적인 사실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면서, 사실심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갑은 변호사로 등록된 곳인 두에항소법원에서 2006년도에 직업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그 일자리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법원은 이동에 관한 장애인에게 접근성이 없었으나 접객 및 보안 직원의 도움으로 갑은 자신의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곳에 출입할 수 있었으므로 갑이 변호사로서 직업활동을 하기 위해 여러 지역 법원에 출입하면서 겪은 정신적 고통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은 구체적인 사실을 오해한 바 있다.

살피건대, 이상의 모든 사실로부터 갑이 원심판결 제2조의 취소를 구한 것은 정당하다.

살피건대, 행정재판법전 제L.821-2조 규정의 적용에 따라 본안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안에 관하여,

국제 및 유럽 조약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법률을 채택한 사실로부터 발생한 국가의 배상책임 청구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전술한 2000. 11. 27.자 지침 제2000/78호의 제2조, 제3조 및 제5조와 마찬가지로 전술한 1971. 12. 31.자 법률 제3조를 함께 고려하면, 고용과 노동에 관한 이 지침은 장애인을 위해 실현될 수 있는 합리적인 편의와 관련하여 고용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며, 이는 또한 변호사의 고용주는 아니지만, 국가에게 사법 보조원의 지위를 가지고 정의의 공공 서비스에 정기적이고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변호사에게, 그가 전문적 활동의 상당부분을 수행하는 공적 임무와 관련된 건물에서 개별 상황의 필요에 따라 과도한 부담이 따르지 않는 한, 장애인인 변호사가 그의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적절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영역을 포함하여 변호사가 자신의 업무 수행을 위해 법원의 각 구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건축 및 주거법전 제L.111-7-3조를 창설한 2005. 2. 11.자 법률 제41조는 지침에 따른 국가의 임무를 이행하기 위해 장애인이 대중에 공개된 법원의 장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함을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프랑스 당국은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 관한 지침에 관한 조항의 실행을 위해 2003. 12. 2.부터 3년의 추가적인 기간을 누리기를 구하고 있고, 지침이 프랑스에 대하여 2006. 12. 2. 이전에 법령으로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개선을 이행하기 위해 이러한 추가 기간을 정하는 것이 지침의 조항과도 그 자체로는 상호모순되지 아니하기도 하며, 이 지침은 대중이 출입하는 건물에 대하여 장애인의 출입에 필요한 개선을 이행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기간을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 전역에 퍼져있는 다양하고 수많은 법원 건물의 문화유산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일부 건물의 유구성 및 이중 일부에 대해 문화재 규정이 적용된다는 측면, 나아가 이동이 제한된 자에게 건물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면, 건축법전 제L.111-7-3조가 정한 최대 10년의 기간 및 2006. 5. 17.자 데크레로 결정된 2015. 1. 1.이라는 일자 역시 합리적인 개선을 이행하라는 지침의 목적과 상충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갑이 탈행정법원이 제2000/78호 지침의 조항을 입법자가 위반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장애인의 법원건물에 접근성이 불충분한 사실에 대하여 국가의 과책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첫째로,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 및 주거법전 제L.111-7-3조의 규정 및 2006. 5. 17.자 데크레가 정한 기간은 2015. 1. 1.자로 만료할 뿐이다. 국가는 법원건물에 전체에 대해 수년전부터 장애인의 접근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 갭이 업무를 수행하는 두에항소법원 관할은 다수의 부지에 오래된 다수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운 곳이 있는데, 법무부장관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특정작업을 점진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또한 이미 착수된 개선 및 복원 공사는 갭이 등록한 베둔느와 그의 사무소가 있는 랑스(Lens)에 위치한 법원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건물에 관한 개선과는 별도로 사법당국은 지침 제2000/78호 제5조가 부가하는 의무이행에 쫓아 임시적인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안내 또는 보안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가 참가할 수 있도록 변론공개 장소를 이동시키는 등으로 신청인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때, 다소 이러한 실현이 늦은 감은 있지만, 갭이 법원건물에 장애인의 접근성에 관한 공사의 완료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만으로 국가가 이와 관련된 법령상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살피건대, 둘째, 2004. 12. 30.자 법률 제19조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포함하며 인종 또는 민족에 관계없이 사람들 간에 동등대우원칙의 실현을 위한 2000. 6. 29.자 유럽연합 지침 제2000/43호를 대체한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연합법의 기타 조항에 관한 2008. 5. 27.자 법률 제2조 및 제4조는 인종 또는 민족에 관계없이 사람들 간에 동등대우원칙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갭은 이러한 성질의 차별에 관해 아무런 불법적 연관성을 원용하지 않고 있고, 이 법률의 위반으로 인한 국가의 책임을 원용할 수 없다.

살피건대, 셋째, 1966. 12. 16.자 뉴욕에서 체결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6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차별을 금지하며 모든 사람을 특히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 국가 또는 사회, 재산, 출신 또는 기타 상태에 관계없이 동등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제26조는 협정이 인정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중 하나와 관련하여 차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만이 이를 원용할 수 있다. 갭은 자신의 업무에 관한 접근성에 있어 간접적인 차별만을 주장할 뿐, 협정에서 인정하는 어떠한 시민적 또는 정치적 권리도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뉴욕협약의 제26조를 위반했음을 원용하는 것은 이유없다.

살피건대, 이상의 모든 사실을 고려할 때, 갭이 두에항소법원 관할에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법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의 불충분으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과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한 탈행정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유없다.

공적 임무 앞에 평등권 침해로 인하여 하는 국가의 무과실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이 피용자가 아니라 사법 공역무의 보조인이라는 사실 자체로 국가가 공직에서의 평등권 침해를 근거로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불성립하지는 아니하고, 이러한 사실로부터 갑이 공역무의 피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갑이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릴행정법원의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

살피건대, 항소의 이진효에 의하여 갑이 행정법원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에 관해 구하는 것은 국사원이 판단한다.

살피건대, 공익이라는 정당한 이유로 국가는 장애인이 법원에 출입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개선을 실현하는 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출석해야 함에도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인인 변호사 갑이 건물의 출입에 있어서 이러한 시한의 연장과 관련하여 갑이 직면한 어려움을 충분히 경감할 수 있었던 완화 조치 없이는, 그것이 심각하고 특별한 성격을 갖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일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책임으로 볼 수 없다.

살피건대, 첫째로, 갑은 자신의 직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원의 출입에 대한 불충분한 접근성으로 인하여 고객의 이탈 및 상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자신의 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제3자로부터 보조를 받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피해는 그가 사법 공역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원에 대한 출입에서 겪는 손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갑이 주장한 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유없다.

다르게 살피건대, 둘째로, 직업활동과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약조건으로부터 갑이 입은 정신적 손해 주장은 한편으로, 갑이 그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 건물들의 다른 부분에 출입해야 한다는 사실로부터, 다른 한편으로, 변호사의 법조직업으로서 의뢰인을 대리한다는 특수한 역할은 공개변론 시마다 사법의 조력인(auxiliaire de justice)에게 법원에 출입하기 위해 견디기 힘든 상황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사법당국이 취한 조치가 온전한 변명이 될 수는 없으며, 갑이 수년간 이 고통을 겪어온 세월을 고려하고, 중대하고 특수한 성격은 이해당사자가 수인해야 하는 통상의 수준을 초과하며, 이에 따라 갑의 손해를 공평의 관점에서 평가할 때 20,000유로로 평가함이 적정하다.

살피건대, 이상의 모든 사실을 고려할 때, 갑이 청구한 국가배상소송을 기각할 2005. 4. 5.자 릴행정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유있고, 국가는 갑에게 20,000유로를 배상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은 2003. 5. 12.부터 위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은 또한 2007. 2. 14.에 이행기가 도래한 이자를 원금에 산입되도록

청구했으며, 이후로 각 연도 만기 날짜에 원금에 산입되어 이자가 발생하도록 청구했다.

행정재판법전 제L.761-1조의 적용에 따른 청구의 점에 관하여,

끝으로 살피건대, 구체적인 소송의 경과과정을 고려하여 국가에게 갭이 국사원을 포함한 두에행정항소법원 및 릴행정법원에서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 75,000유로를 지급하도록 한다.

주문

제1조 2005. 4. 5. 릴행정법원의 제2조 및 두에행정항소법원의 제2조 판결은 취소한다.

제2조 국가는 갭에게 20,000유로의 금원 및 이에 대한 2003. 5. 12.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007. 2. 14.에 이행기가 도래한 이자는 이 날짜에 원금에 산입하고, 이 날짜로부터 이어지는 각 연도 만기 날짜에 원금에 산입되어 이자가 발생한다.

제3조 국가는 갭에 대하여 행정재판법전 제L.761-1조에 따라 3,000유로의 금원을 지급하라.

제4조 갭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제5조 ① 본 판결은 갭, 국무장관, 법무부장관 및 총리에게 통지한다.

② 등본은 국무장관, 환경부장관, 외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한다.

- 제13조제2항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전 제23-1조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재판상의 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민사소송법전

제23-1조 ① 당사자 중 1인이 청각 장애를 겪고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항고할 수 없는 명령으로 수화 또는 구어의 통역 또는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진 자에게 조력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마찬가지로 당사자와 대화하기 위하여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그러나 청각장애를 겪고 있는 당사자가 그와의 대화를 보장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그가 조력하는 때에는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제22조 사생활의 존중

- 협약 제22조제1항은 “장애인은 거주지 또는 거주형태와 무관하게 자신의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 및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에 관하여 임의적 또는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대하여 불법적인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장애인은 그러한 간섭 또는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정하고 있고, 제22조제1항은 “당사국은 장애인의 개인정보 및 건강과 재화에 관한 사적 정보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한다”라고 적고 있으며, 제22조제1항과 제2항은 직접적 규정으로 평가됨

- 프랑스민법전 제9조제1항은 “누구나 자신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파기원 제1민사부 1996년 11월 5일 판결은 불법행위의 일반규정인 제1382조(현1240조)의 과책이나 손해를 입증할 필요없이 사생활 침해 사실 그 자체만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여 요건을 완화한 바 있음.²⁶⁾ 제9조제2항은 “법원은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계쟁물 기탁이나 압류 등과 같은 사생활의 침해를 막거나 중단시키기에 적절한 모든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함
- 2016년도 발간된 「취약한 성인을 위한 법적보호(Protection juridique des majeurs vulnérables)」에 관한 권리보호관 보고서에서, 시설에 거주 중인 장애인의 방에 감시 카메라의 설치가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음²⁷⁾
- 의료기관들은 신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다루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관한 정보와 자유 국가위원회(CNIL: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이 이를 통제함
- 장애에 관한 개인정보 역시 엄격하게 관리되는데, 장애를 겪는 자가 고용인 또는 장래의 고용주에 대해서 자신의 장애에 관한 고지를 한 바 없더라도, 그가 장애로부터 누리는 지위는 박탈되지 아니함

[파기원, 민사, 사회부 2013. 9. 18. 결정 제12-17,159호²⁸⁾]

프랑스 공화국
프랑스 인민의 이름으로

파기원, 사회부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다.

원심에 따르면, 2006. 5. 22. 상고인은 피상고인 회사의 노동자로 고용된 후, 2007. 9. 18. 직업 지도 및 재취업 기술위원회로부터 장애인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2007. 3. 10.부터 그는 여러 번 병가를 냈고, 2008. 3. 3. 상고인은 사내에서 여러 번 결석과

26) 고철웅, “프랑스법의 초상권론에 관한 일고찰”, 「비교사법」 제24권 1호(통권76호), 2017, p.187-188. ‘과책’의 번역례에 관해서는 황재훈, “프랑스법상 과책과 민사책임의 관계”, 「저스티스」 통권 제183호, 2021.

27) Rapport, *Protection juridique des majeurs vulnérables*, Défenseur des droits, 2016, p. 44-45.

28) Cour de cassation, civile, Chambre sociale, 18 septembre 2013, 12-17.159, Inédit. 자신의 장애가 밝혀지지 않을 권리에 관한 별도의 재판례로는 Soc. 6 mai 2003, pourvoi n° 01-14.370. 이 있다.

그에 대한 대체 근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해고당하자, 고용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점에 관하여,

이 논점은 상고를 허용하는 성질의 주장이 아니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제2점에 관하여,

노동법전 제5113-9조를 보건대,

판결이유로, 원심은 보상적 손해의 통고 및 유급휴가에 관해 다투는 피고용인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그가 2007. 9.부터 장애인 근로자의 신분을 누린다는 사실을 통보했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사전 정보가 없는 이상 연장된 통고기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피고용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내용은 노동자의 의료진에게만 위탁되고, 그러므로 그의 해고통고 이전에 장애인 근로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음은 어떠한 과책으로도 귀결되지 않고, 피고용자는 노동법전 제L.5213-9조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항소법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정함으로써 이 규정을 오인하였다.

이를 이유로,

엑성프로방스(Aix-en-Provence)항소법원에 의한 2011. 5. 18.자 판결에서 오로지 갑이 보상적 손해의 통고 및 유급휴가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해서만 파기하고 원심을 취소한다. 이에 따라, 이 점에 관하여 사건과 당사자들이 상기 판결 이전에 있었던 상태로 되돌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다르게 구성된 엑성프로방스항소법원으로 환송한다.

소송비용은 사측의 부담으로 한다.

민사소송법전 제700조 및 1991. 7. 10.자 법률 제37조에 따라, 사측의 청구를 기각하며, 사측은 갑에게 2,000유로를 지급하라.

- 장애와 관련해서 관련 업무에 적합한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오로지 담당의사가 결정함

(7) 제27조 근로 및 고용

- 협약 제27조는 제1항은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한다. 이는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직업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고용기간 동안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하여, 특히 다음의 사항을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가 내지 카에서 구체적인 입법조치를 적고 있으며, 제27조제2항은 “당사국은 장애인이 노예상태 또는 강제노역에 처하지 아니하고, 강요되거나 강제된 노동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되도록 보장한다”라고 적고 있음. 제27조제1항의 마, 바, 사, 아, 차, 카는 해석적 규정으로 평가되며, 나머지는 직접적 효력을 갖는 규정으로 평가됨

- 1987년 7월 10일 자 법률 제87-517호를 통해 고용의무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장애인들이 채용, 승진, 교육기회, 수입의 차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장애인 중 일부는 고용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이러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업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음
- 프랑스법상 노동과 고용에 관련한 장애인차별 금지에 관해서는 2008. 5. 27.자 법률 제2008-496호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법전상에서는 제L.1132-1조가 이를 규율함. 공직에 있어서는 1983. 7. 13.자 법률 제83-634호 제6조상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림 1] 2017년도 권리보호관이 발행한 장애인 고용 관련 보고서 표지



- 프랑스는 독일과 우리나라와 같이 장애인의 고용증진을 위하여 2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고용비율을 6%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할당 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프랑스의 공공부문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의료법인에도 동일한 비율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부과되고 있음(노동법전 L.5212-1조). 또한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관은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음²⁹⁾

(8) 제29조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그림 2] 프랑스 파리의 한 투표소에서 장애인 유권자가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³⁰⁾



- 협약 제29조는 당사국에게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당사국은 특히 투표절차, 시설 및 용구가 적절하고, 접근가능하며, 그 이해와 사용이 용이하도록 보장해야 함. 협약 제29조는 가의 1) 내지 3)이 해석적인 규정인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직접적 효력을 가지는 규정으로 평가됨
- 이에 따라, 선거법전 제L.62-2조는 투표소와 투표방식은 시각 또는 청각과 같은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 등 장애의 형태에 관계없이 접근성을 가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D.56-1조는 투표일에 투표가 이뤄지는 장소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그 장애의 형태와 관계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임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그 방식에 관계없이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고 이동하는 데 용이하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권리보호관은 시각장애인의 투표의 비밀성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신청을 접수하여 2011년 12월에 협회와 선출공무원, 전문가와 내무부 장관 대리가 참석한 회의에서 이

29) 황재훈, 프랑스의 소방공무원 고용사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9, p.24.

30) 프랑스 파리시 홈페이지 2021. 6. 11.자 “Handicap : des élections plus accessibles”기사 중 사진 참조(2022. 3. 30. 최종방문). Handicap : des élections plus accessibles - Ville de Paris.

문제를 논의한 바 있음. 여기서의 논의가 2012년 1월 12일 자 권리보호관 결정 제MLD-2012-2호를 통해 권고 결정으로 이어짐³¹⁾

[권리보호관 결정 제MLD-2012-2호]

파리, 2012. 1. 12.자

권리보호관,

1958. 10. 4. 헌법 제71-1조,

권리보호관에 관한 2011. 3. 29.자 조직법률 제2011-333호,

권리보호관에 적용되는 절차에 관한 2011. 7. 29.자 테크레 제2011-904호,

선거법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2011. 1. 12.자 차별철폐 및 평등증진에 관한 협의체의 의견을 살피고,

Valentin Haüy 협회 회원인 한 시장은 맹인과 기타 시각장애가 있는 유권자가 비밀투표 원칙의 존중을 방해하는 현행 투표방식으로 인해 겪는 차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시정을 신청하였고, 권리감독관은 해당 주제에 관하여 조사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차별철폐 및 평등증진을 담당하는 Maryvonne Lyazid 부의장이 주재한 2011. 12. 14.자 회의에서는 대학 사단법인, 선출직 공무원, 전문가 및 내무부(참가자 명단은 목록에 첨부) 등이 참가하여 시각 장애가 있는 유권자의 자율적인 투표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표명할 기회를 갖고, 첨부와 같이 구체적인 권고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 권고사항들은 권리감독관의 업무와 협조한 국가장애인자문위원회(CNCPH)에서 현재 마무리 중인 권고사항들과 일치한다.

권리보호관, 도미니크 보디스

1) 개요 및 법적배경

본론에 앞서,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노년층에서 시각장애를 겪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청각장애 문제도 겪고 있다(만 75세 이상인 자 중에서 70%가 시각 및 청각에 관한 문제를 겪고 있다). 프랑스통계청(ISEE)에 따르면 2011. 2.말 기준 4,320만 유권자 중에서 노년층은 대표적인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31) Rapport, L'accès au vote des personnes handicapées, Défenseur des droits, 2015, p.4.

이와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국내·외적 규정들은 ① 유권자 사이의 평등, ② 비밀투표 ③ 투표의 접근성 등 강력한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장애인의 평등한 권리와 기회, 참여 및 시민권에 관한 2005. 2. 11.자 법률 제2005-102호는 장애인의 투표접근성 향상을 위해 선거법전을 수정하였다. 이에 선거법전 제L.62-2조는 “투표 사무소 및 방식은 장애의 유형, 특히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 장애 유형 등에 관계없이 테크레로 정한 요건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적고 있다.

2005. 2. 11.자 법률의 적용을 위해 구성된 2006. 10. 20.자 테크레 제2006-1287호는 “투표 사무소 및 방식은 그 장애의 유형에 관계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접근 가능해야 한다. 투표 사무소장은 장애인의 자율적인 투표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유익한 조치를 취한다(선거법전 제D.61-1조)”라고 적고 있다.

이 법 규정들이 맹인과 기타 시각장애인들의 투표접근성을 보장하는 수정을 촉구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이 자들에 대한 투표 및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있다.

2) 국제적 비교

우편투표, 대리투표 및 소위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한 투표 방식은 장애인 유권자를 돕기 위해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영국, 스페인, 독일 또는 캐나다와 같은 특정 국가에서는 투표 “판(matrice)” 또는 “틀(gabarit)”이라는 기술을 쓰고 있다. 틀은 투표용지가 그 안에 삽입되고 선택을 표시해야 하는 곳에 구멍이 있는 판지 또는 플라스틱 조각이다. 선거입회인은 투표자에게 어느 구멍이 어느 후보자에 해당하는지 알려주고 유권자는 투표용지에 투표하기 위해 기표소에 홀로 간다. 이 방식은 프랑스에서 총선에서 사용되지 않는 단일투표지만 사용할 수 있다.

스페인에서는 내무부가 등록한 유권자가 투표 전에 특정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등록받는다.

전자투표를 시행하는 나라들에서는 스위스의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예컨대, 제네바 유권자의 90%는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투표한다).

게다가 브라질과 프랑스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투표기구는 시각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어려움 없이 스스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다.

3) 권고

비밀투표를 보장하고, 이에 따라 유권자가 자율적인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지역, 레지옹 및 국가에서 선거후보자의 이름이 투표지에 점자로 새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을 우선 염두에 둔다.

이러한 제한은 참가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는데, 한편으로는 모든 투표지를 접자로 인쇄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접자를 읽을 수 있는 맹인들이 적다는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접자 투표용지를 제공하는 것은 많은 심각한 실무적 문제점들을 야기한다. 사실 이러한 투표지를 생성할 수 있는 인쇄기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 반면, 가격, 인쇄소 위치, 짧은 인쇄기간 및 배송 등의 상태를 고려하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렵다. 게다가 방대한 인쇄물의 양은 인쇄물의 부피를 최소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야기하는데, 이는 입체적인 인쇄물과는 상충하는 것으로 보이며, 운송 및 취급 후에는 유권자가 식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투표에 앞선 정보제공에 관하여,

특정된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가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선거 전에 정보를 얻기 위해 정당에서 제공할 수 있다(그러나 선거법전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특히 선거유세와 관련하여 “정보처리와 자유” 법률에 반하는 홍보물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가 그들의 홍보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서가 제작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접근성 규범을 충족하는 인터넷 사이트, 글자크기 16포인트의 가독성 높은 문서 및 대조, 인터넷에 있는 문서는 여러 문서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PDF 문서는 Acrobat Pro 또는 DTP 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

투표소에 관하여,

외부에 설치된 투표안내판은 읽기에 최적화 되어야 한다(예컨대, Police Aria simple 글꼴, 글자크기 18, 안내판의 중앙이 1.6m 높이에 위치).

사무실 입구에서부터 투표소까지 점자블록이 설치될 수 있다.

사무실 및 투표소에 충분한 조명이 확보되어야 하며, 사무실에서는 최소 100lux의 지상 조명 수준, 투표소는 최소 300lux가 투표용지에 위치하는 이를 수 있는 조명 수준이 갖춰지도록 권장한다.

투표용지에 관하여,

투표용지는 시각적 대비가 강한 큰 활자로 인쇄된다.

중기적으로, 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QR코드는 맹인과 기타 시각장애인들이 투표용지를 스캔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부착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물품의 진화는 수 개월 내에 완료될 수 없다. 최선의 경우, 2014년도 지방선거에서나 시범적용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제한을 차기 선거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무부가 각 경시청에 대하여 투표용지 더미 앞에 각 후보자의 이름(A4용지)을 매우 가독성 있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개별후보자의 이름을 접어서 거치하는 거치대 표준을 제공한다.

투표기계 및 전자투표에 관하여,

투표기계는 각 주(département)의 국가를 대표하는 자가 결정으로 정하는 목록에 있는 3,500명 이상 거주하는 꼬핀의 투표사무소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 기계는 투표기계의 승인조건을 정하는 기술규정을 승인한 2003. 11. 17.자 아레떼를 준수해야 한다. 기술규정은 특히 한편으로는 장애인의 접근 및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시각 장애인이 혼자서 투표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장치(청각, 감각 또는 기타)를 포함해야 함을 예정한다. 소프트웨어의 인간공학적 측면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장치를 활용하기 위한 교육은 선거일 이전에 시각장애가 있는 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프랑스 밖에 거주하는 프랑스 국민에 대한 전자투표는 접근성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절차를 사용하여 시행된다. 이러한 예외는 사무소의 부재를 이유로 일반적으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인식에 관하여,

후보자, 투표소 관계자 및 이해관계인과 맹인 및 기타 시각장애인을 돌보는 의료인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2007년도 복합부처에서 작성한 장애인보고서는 국가장애인권고위원회(CNCPH)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다시 배포된 바 있다.

투표소 직원들은 장애인을 맞이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표준을 정립 중인 맹인 및 약시인의 사회적 발전을 위한 프랑스연맹(CFPSAA)이 실무례를 마련할 것이며, 내무부에 의해 프랑스시장(市長)협회(AMF)에 배포될 것이다.

법률체계 및 투표독려에 관한 인식의 제고는 내무부의 조력을 통해 협회에서 준비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과 제3자인 조력자는 자신의 주소지에서 투표를 준비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예컨대, 제3자가 투표지를 알파벳 순으로 정렬해주고 유권자에게 단독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방식은 투표용지가 일정 숫자 이하라는 제한하에서 기표소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활용될 수 있다. 조력자(신뢰관계에 있는 제3자)가 동일한 꼬핀 또는 같은 선거인명부에 속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부록 1] 2011. 12. 14.자 회의 참가자 명부

[부록 2] 맹인 및 기타 시각장애인의 투표 접근권의 법적체계

IV. 감독 및 지원기구: 권리보호관

[그림 3] 프랑스 권리보호관의 로고



1. 권리보호관 제도의 배경

- 협약 제33-1조는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위하여 국내조직의 체계에 맞춰 정부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다양한 부문과 다양한 수준에서 관련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 내에 조정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여 협약의 국내적 이행 및 감독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 프랑스는 협약 제33-2조³²⁾에 따라 권리보호관(le Défenseur des droit)³³⁾에게 협약준수에 관한 감독권을 부여함. 권리보호관은 헌법 제71-1조상에 그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권리보호관에 관한 2011년 3월 29일 자 조직법률 제2011-333호」(이하 “조직법률”이라 한다)에서 규정을 하고 있음³⁴⁾
- 권리보호관은 2011년도에 공화국조정자(le Médiateur de la République), 아동보호관(le Défenseur des enfants), 프랑스차별철폐와평등신장을 위한 고등기구(la Haute autorité de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et pour l'égalité) 및 국가보안윤리위원회

32) 제33조(국내적 이행 및 감독) 2. 당사국은 자국의 입법과 행정 체계에 따라 이 협약의 이행을 증진, 보호 및 감독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당사국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 기구를 포함한 체제를 유지, 강화, 지정 또는 설치한다. 이러한 체제를 지정 또는 설치할 경우, 당사국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의 지위 및 역할과 관련된 원칙을 고려한다.

33) 권리보호관은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상 지위가 아니라 법률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6년의 임기가 아니라 3년 중임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박재현, “프랑스 시민의 권리 방어를 위한 권리보호관”, 『홍익법학』 제15권 제3호, 2014, p.142

34) 박재현, “프랑스 시민의 권리 방어를 위한 권리보호관”, 『홍익법학』 제15권 제3호, 2014, p.143에서는 “프랑스에서 옴부즈만의 역할을 하였던 것은 공화국조정자(Médiateur de la République)이었지만 2008년 7월 23일 헌법 개정에 의해 권리보호관(Défenseur des droits)을 창설하고 2011년 3월 29일 조직법에 의해 권리보호관을 제도화했다. 따라서 권리보호관의 뿌리는 공화국조정자라고 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La Commission nationale de déontologie de la sécurité) 등 총 4개의 독립행정청의 권한을 이어받아 창설됨

2. 권리보호관의 조직

- 권리보호관은 국무회의(Conseil des ministres)에서 데크레(décret)로 임명함(조직법률 제1조). 권리보호관의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하지 않음³⁵⁾

[그림 4] 2020. 7. 22.부터 6년의 임기를 수행 중인 클레어 에동(Claire Hédon)³⁶⁾ 권리보호관



- 권리보호관은 아동의 권리옹호 및 증진, 차별에 대한 투쟁 및 평등의 증진, 내부고발자의 지도 및 보호, 보안분야의 윤리에 관한 권한의 수행을 보조하는 회의(collège)들을 지휘함(조직법률 제11조제1항)
- 권리보호관의 제청에 따라, 총리는 아동의 권리 옹호 및 증진을 담당하는 회의의 부의장인 아동보호관(le Défenseur des enfants), 보안분야의 윤리를 담당하는 회의의 부의장인 보좌관, 차별 투쟁 및 평등 증진을 담당하는 회의의 부의장인 보좌관, 내부고발자 지원을 담당하기 위한 보좌관을 임명함(조직법률 제11조제2항)
- 현재 아동보호관으로는 특수아동교육 전문가이자 아동보호기관의 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에릭 델레마(Éric Delemar)씨가 임명되어 있고, 보안윤리분야의 보좌관으로는 검사, 판사, 변호사를 두루 거친 폴린 캐비(Pauline Caby)씨가 임명되어 있으며, 차별 투쟁 및 평등 증진분야의 보좌관으로는 변호사이자 파리의 하원의원이며, 2012년부터

35) 박재현, “프랑스 시민의 권리 방어를 위한 권리보호관”, 『홍익법학』 제15권 제3호, 2014, p.147에서는 “권리보호관의 임기는 6년인데, 첫째, 권리보호관에게 맡겨진 임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고 둘째, 모든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6년의 기간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적고 있다.

36) 1962년 10월 5일 파리 출생인 클레어 에동은 파리2대학에서 법학석사를 마친 후 CELSA에서 커뮤니케이션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에서 잠깐 일한 후에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일했다.

2014년까지 해외영토 장관을 역임한 조지 포 랑제빈(George Pau-Langevin)씨가 임명되어 있음³⁷⁾

3. 권리보호관의 장애인 권리보호

- 권리보호관은 해외에 거주하는 프랑스인을 위해서뿐 아니라 영토 전체에 대해 자신의 권한 하에 있는 행정관(délégué)을 선임할 수 있음(조직법률 제37조제1항). 현재 행정관은 총 536명이 위촉되어 있음³⁸⁾
- 권리보호관에 대한 소는 무상이며(조직법률 제6조제1항 참조), 직권으로도 사건을 진행할 수 있음. 2019년도에 권리감독관에게 접수된 사건은 총 103,066건이며, 99,095건에 대해서 다루었음.³⁹⁾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의 청구가 있으면 권리보호관은 서류를 작성하고 절차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주는 일에 참여함⁴⁰⁾
- 권리보호관의 임무는 첫째, 장애인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알려주고 그 권리를 지켜주면서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 둘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고 관계기관들의 협업을 촉진하여 권리를 증진하는 업무, 셋째, 국내법과 그 시행이 협약에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모니터링 업무 등임
- 2019년도에 권리보호관이 차별을 이유로 접수한 사건 중에서 장애와 관련된 차별은 1,237건으로 전체 차별 사건 중 22.7%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음⁴¹⁾
- 한편, 권리보호관이 형법전 제225-2조 및 제432-7조 및 노동법전 제L.1146-1조 및 제L.2146-2조상의 제재를 받는 차별이 성립하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소추의 대상이 아직 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자인 자연인에 대해서는 3,000유로를, 법인에 대해서는 15,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해적 성격을 가지는 제재금의 지급을 제안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피해자의 보상금에 충당됨. 제재금의 액수는 사실의 중대성, 위반자의 재원에 따라 결정됨(조직법률 제28조 II 제1항)

37) 프랑스정부 권리보호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defenseurdesdroits.fr/fr/institution/organisation/adjoints> (2022. 4. 15. 최종방문).

38) 프랑스정부 권리보호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defenseurdesdroits.fr/fr/institution/organisation/adjoints> (2022. 4. 15. 최종방문).

39) Rapport, *La mise en oeuvre de la Convention relative aux droits des personnes handicapées(CIDPH)*, Défenseur des droits, 2020, p.8.

40) 박재현, “프랑스 시민의 권리 방어를 위한 권리보호관”, 「홍익법학」 제15권 제3호, 2014, p.152.

41) Rapport, *La mise en oeuvre de la Convention relative aux droits des personnes handicapées(CIDPH)*, Défenseur des droits, 2020, p.9.

- 권리보호관은 신청을 통한 통로 외에도, 관련 분야의 시민단체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있음. 연 평균 2회 정도 장애인협회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장애인 사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청취할 기회를 가짐⁴²⁾
- 권리보호관은 국사원의 부원장 및 감사원장에 대하여 모든 연구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조직법률 제19조). 장애인과 관련하여, 2015년도에는 『장애인의 투표권』, 2016년도에는 『취약한 성인을 위한 법적보호』, 『조약상 조련의 직접적 효과에 관한 연구』, 『장애인권리 보호를 위한 조약의 이해와 실행』, 2017년도엔 『장애인의 고용 및 합리적 조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음



42) Rapport, *La mise en oeuvre de la Convention relative aux droits des personnes handicapées(CIDPH)*, Défenseur des droits, 2020, p.9.

V. 결론 및 시사점

- 프랑스는 협약에 관한 법리연구와 사례연구를 잘 수행하고 있고, 보고서를 통해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음. 이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장애인 권리 구제에 관한 현황을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장애인 권리 구제의 효율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임. 그러므로 프랑스의 주요 보고서를 국내에 정기적으로 소개하면 국내 장애인의 권리구제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특히, 2017년도 권리보호관이 발행한 장애인 고용 관련 보고서와 같이 시의성 높은 주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국내에 소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화에 따라 발생하는 장애를 기존의 장애 개념에 포섭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성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음
- 국내 장애인들이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방법이 제한적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접수된 사건을 처리할 뿐이고, 장애인의 사건 접수를 위한 지원제도는 부족한 상황임. 프랑스의 권리보호관은 서류를 작성하고 절차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 향후 선택 의정서에 따른 개인진정제도가 활용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번역이라는 언어장벽을 넘어야 함.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특수성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방안을 검토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권리보호관 사이의 실무교류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문헌

[국내문헌]

- 고철웅, “프랑스법의 초상권론에 관한 일고찰”, 『비교사법』 제24권 1호(통권76호), 2017
- 박재현, “프랑스 시민의 권리 방어를 위한 권리보호관”, 『홍익법학』 제15권 제3호, 2014
- 황재훈, “프랑스법상 과책과 민사책임의 관계”, 『저스티스』 통권 제183호, 한국법학원, 2021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프랑스의 소방공무원 고용사례”, 2019
- 황재훈 외 3인, “국내 장애인 권리구제 관련법과 UN CRPD 선택의정서의 개인진정제도 비교를 통한 국내법 개정 연구”, 한국장애인연맹(DPI), 2021

[국외문헌]

- D. Maëlle, *La non-discrimination en droit des contrats*, Nouvelle Bibliothèque de Thèses, Vol. 172, Dalloz, 2018
- Guide, *La Convention relative aux droits des personnes handicapées*, Défenseur des droits, 2016
- Guide, *Emploi des personnes en situation de handicap et aménagement raisonnable*, Défenseur des droits, 2017
- Rapport, *La mise en oeuvre de la Convention relative aux droits des personnes handicapées(CIDPH)*, Défenseur des droits, 2020
- Rapport, *L'accès au vote des personnes handicapées*, Défenseur des droits, 2015
- Rapport, *Protection juridique des majeurs vulnérables*, Défenseur des droits, 2016

부 록

[권리보호관에 관한 2011. 3. 29.자 조직 법률 제2011-333호 (1)]

제1편 총칙 (제1조 내지 제3조)

제2편 권리보호관의 관할 및 회부 관련 규정 (제4조 내지 제10조)

제3편 권리보호관의 개입에 관한 규정 (제11조 내지 제36조)

제4편 권리보호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 내지 제38조)

제5편 최종 조항 (제40조 내지 제44조)

하원과 상원이 채택하고,
헌법위원회는 헌법에 합치함을 선언하였다.
공화국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률을 공포한다.

제1편 총칙 (제1조 내지 제3조)

제1조 권리보호관은 헌법 제13조의 마지막 항에 예정된 절차를 거친 후, 국무회의가 데크레로 임명한다. 그는 자신의 사임하거나 국사원 데크레로 정하는 장애사유 (empêchement)가 있는 때에만 임무가 종료될 수 있다.

제2조(2017. 1. 20.자 법률 제2017-54호 제5조에 의해 수정됨) ① 독립행정청인 권리보호관은 그의 권한행사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도 영향도 받지 아니한다.
② 권리보호관과 그의 보좌관은 그들의 의견표명이나 그들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행위로 인해 기소, 조사, 체포, 구금 또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제3조 ① 권리보호관 및 그의 보좌관의 직무는 정부, 헌법위원회, 고등사법관위원회, 경제·사회 및 환경위원회의 구성원이 되거나 모든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와 양립할 수 없다.
② 정부, 헌법위원회, 고등사법관위원회, 경제·사회 및 환경위원회의 구성원이나 선출직 공무원이 권리보호관 또는 관리보호위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그가 그의 임명이 관보에 게재된 때로부터 8일 동안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에는 후자를 선택한 것으로 본다.
③ 권리보호관 및 그의 보좌관의 직무는 또한 기타 공공 직무나 고용, 직업 활동 및 모든 회사, 기업 또는 기관의 이사회의 의장 또는 구성원, 감사위원회의 의장 또는 구성원 및 업무집행사원의 직무와도 양립할 수 없다.

④ 권리보호관 및 그의 보좌관의 임명이 공포된 때로부터 1개월의 기간 이내에, 임명된 자는 그의 새로운 직무와 양립할 수 없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여야 한다. 그가 공무원 또는 사법관인 때에는, 그는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당연파견된 지위에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어떠한 발탁에 의한 승진을 받을 수 없다.

제2편 권리보호관의 관할 및 회부 관련 규정 (제4조 내지 제10조)

제4조 권리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가의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및 공역무를 담당하는 기관과의 관계에서 권리와 자유의 수호.
2. 프랑스가 정식으로 비준 또는 승인한 법 또는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권리의 옹호 및 증진.
3. 평등을 증진하고, 프랑스가 정식으로 비준 또는 승인한 법 또는 국제협약에 의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금지되는 차별에 대한 투쟁.
4. 공화국 영토에서 안보 활동을 수행하는 자의 윤리준수의 보장.
5.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모든 내부고발자에 대한 정보제공, 조언, 관계행정청에 대한 연결 및 내부고발자와 내부고발절차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자의 권리와 자유의 방어[2016. 12. 8.자 헌법위원회 결정 제2016-740DC호에 따라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조항으로 선언].

제5조 ① 권리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

1. 국가의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및 공역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운영으로 인하여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2.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과 관련된 상황에 관한 보호를 요청하는 아동, 그의 법정대리인, 그의 가족구성원, 의료 또는 사회복지 기관, 아동의 권리 보호를 정관의 내용으로 삽입한 지 최소 5년이 경과한 협회.
 3. 프랑스가 정식으로 비준 또는 승인한 법 또는 국제협약에 의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금지하는 차별의 피해자, 차별의 피해자와 함께 또는 그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차별과의 투쟁 또는 차별에 의한 피해자의 보조를 정관의 내용으로 삽입한 지 최소 5년이 경과한 협회.
 4. 보안분야 윤리규칙 위반으로 평가되는 사실의 피해자 또는 증인이었던 자.
- ② 권리보호관은 공법인 및 사인에 의한 접수를 받을 수 있다.
- ③ 그는 또한 직권으로 또는 권리 및 자유가 침해당한 사람의 상속인에 의해 접수한다.
- ④ 그는 보좌관들이 받은 사건도 접수한다.

제6조 ① 권리보호관에 대한 접수는 무상이다.

②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상의 권한에 관한 문제를 제외하고, 접수는 문제가 제기된 공법인 또는 단체의 사전절차를 거친다.

③ 권리보호관에 대한 접수는 그 자체만으로는 민사상, 행정상 또는 형사상 시효기간을 중단시키지도 아니하고 정지시키지도 아니하며, 행정 또는 소송 청구에 관한 기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제7조 ① 청구는 하원의원, 상원의원, 유럽의회의 프랑스 대표자에 대해서 이뤄질 수 있으며, 권리보호관의 개입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권리보호관에게 전달한다. 권리보호관은 하원의원, 상원의원, 유럽의회의 프랑스 대표자에 대해서 전달 후의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

② 하원의 구성원은, 독립적인 권한으로, 권리보호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쟁점을 권리보호관에 접수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하원의장 또는 상원의장은 그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하원에 접수된 모든 청원을 권리보호관에게 전달할 수 있다.

④ 마찬가지로 권리보호관은 그의 권한에 속하며 그의 개입이 요구되는 사안 중 유럽 또는 기타 외국의 옴부즈맨이 그에게 보낸 청원을 심리한다.

제8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아동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 이 외의 자로부터 접수가 이뤄진 때에는 권리보호관은 본인과 경우에 따라서는 그의 상속인에 대하여 통지한 후 그의 개입에 반대하지 아니하는 때에만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자의 사건은 언제나 접수할 수 있다.

제9조 ① 권리보호관이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다른 독립행정청에 청원을 이송할 때, 그는 이 이송에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고, 후속 조치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권리보호관은 그의 요청에 따라 국가정보및자유위원회 및 행정문서접근위원회와 협력한다.

제10조 ① 권리보호관은 공법인 및 제4조제1호상의 조직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는 접수를 받거나 직권으로 접수할 수 없다.

② 그는 제4조제3호 및 제5호상의 권한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편으로 공법인과 조직, 다른 한편으로 그 직원 사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는 접수를 받거나 직권으로 접수할 수 없다.

③ 그는 제4조제5호상의 권한에 관한 경우에 대해서 법률에 의해 예정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서는 접수를 받거나 직권으로 접수할 수 없다.

제3편 권리보호관의 개입에 관한 규정 (제11조 내지 제36조)

제1장 회의(collège)에 관한 규정 (제11조 내지 제17조)

제11조 I. ① 권리보호관은 아동의 권리 옹호 및 증진, 차별에 대한 투쟁 및 평등의 증진, 내부고발자의 지도 및 보호, 보안분야의 윤리에 관한 권한의 수행을 보조하는 회의들을 지휘한다.

② 권리보호관의 제청에 따라, 총리는 다음의 각 권리보호관 보좌관(les adjoints du Défenseur des droits)을 임명한다.

- 이 분야에 대한 지식 또는 경함을 바탕으로 선출된 아동의 권리 옹호 및 증진을 담당하는 회의의 부의장인 아동보호관(le Défenseur des enfants).
- 이 분야에 대한 지식 또는 경함을 바탕으로 선출된 보안분야의 윤리를 담당하는 회의의 부의장인 보좌관.
- 이 분야에 대한 지식 또는 경함을 바탕으로 선출된 차별 투쟁 및 평등 증진을 담당하는 회의의 부의장인 보좌관.
- 내부고발자 지원을 담당하기 위한 보좌관.

II. ① 보좌관은 권리보호관과 함께, 또한 그의 권한하에 위치한다.

② 권리보호관은 그의 보좌관에게 제19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6조, 제18조의 마지막 항 및 제25조의 영역을 제외하고 그들의 각 권한의 범위에서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③ 각 보좌관은 그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관이 주관하는 회의의 부의장으로 그를 대신할 수 있으며,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제3국의 독립행정청의 조직에서도 대표할 수 있다.

[2022. 3. 17. 헌법위원회 제2022-848호 결정은 공익제보자의 신고에 관한 권리보호관의 역할 강화에 관한 조직법률 제2조는 헌법에 합치함을 선언했으나, 제11문에 관하여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상은 권리보호관의 제청에 따라 그의 보좌관을 임명합니다. 제11조제2항은 권리보호관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이 독립성은 권리보호관의 제청에 따라 마찬가지로 내부고발자의 조력에 대한 보좌관의 임무 역시 수상에 의해 종료한다”라는 유보가 있었다.]

제12조 권리보호관은 여러 권한의 분야에 걸친 또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청원이나 쟁점을 다루기 위해 여러 회의체가 함께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① 보안윤리와 관련하여, 권리보호관은, 모든 새로운 쟁점에 대하여, 부의장인 그의 보좌관을 제외하고 다음의 자들이 추가된 회의로부터 의견을 듣는다.

- 상원의장이 지명한 3인.
 - 하원의장이 지명한 3인.
 - 국사원 부의장이 지명한 국사원의 전·현직 구성원 1인.
 - 파기원장(le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e cassation)과 검찰총장(le procureur général)이 공동으로 지명한 파기원의 전·현직 구성원 1인.
- ② 회의의 구성원은 그들의 보안유리 분야에 대한 지식 또는 경함을 이유로 지명된다.
 - ③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의 지명에 관해서는 여성과 남성의 대표성에 기여한다.
 - ④ 권리보호관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그의 보좌관은 투표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 ⑤ 표결 결과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의 의견이 우선한다.

제14조 ① 아동의 권리 옹호와 보호와 관련하여, 권리보호관은, 모든 새로운 쟁점에 대하여, 부의장인 그의 보좌관을 제외하고 다음의 자들이 추가된 회의로부터 의견을 듣는다.

- 상원의장이 지명한 2인.
 - 하원의장이 지명한 2인.
 - 경제·사회·환경위원회의 장이 지명한 1인.
 - 파기원장과 검찰총장에 의해 공동으로 지명된 파기원의 전·현직 구성원 1인.
- ② 회의의 구성원은 그들의 아동의 권리 옹호와 보호분야에 대한 지식 또는 경함을 이유로 지명된다.
 - ③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의 지명에 관해서는 여성과 남성의 대표성에 기여한다.
 - ④ 권리보호관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그의 보좌관은 투표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 ⑤ 표결 결과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의 의견이 우선한다.

제15조 ① 차별에 대한 투쟁과 평등의 증진과 관련하여, 권리보호관은, 모든 새로운 쟁점에 대하여, 부의장인 그의 보좌관을 제외하고 다음의 자들이 추가된 회의로부터 의견을 듣는다.

- 상원의장이 지명한 3인.
 - 하원의장이 지명한 3인.
 - 국사원 부의장이 지명한 1인.
 - 파기원장이 지명한 1인.
- ② 회의의 구성원은 그들의 차별에 대한 투쟁과 평등의 증진분야에 대한 지식 또는 경함을 이유로 지명된다.
 - ③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의 지명에 관해서는 여성과 남성의 대표성에 기여한다.
 - ④ 권리보호관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그의 보좌관은 투표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 ⑤ 표결 결과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의 의견이 우선한다.

- 제16조** ① 권리보호관 보좌관과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상의 회의의 구성원의 위임은 권리보호관의 위임과 함께 종료한다. 권리보호관 보좌관의 위임은 갱신할 수 없다.
- ② 그의 임기가 중단된 권리보호관 보좌관과 회의의 구성원은 그의 남은 임기동안 새로운 위임으로 대체된다. 이 기간이 2년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권리보호관 보좌관의 임기는 갱신할 수 있다.
- ③ 제13조상의 회의 구성원의 자격은 보안 분야의 주요활동과 양립할 수 없다.
- ④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위임의 사임 또는 장애사유가 없는 한 그 임기가 종료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가 예정한 조건에 따라 지명된 회의의 모든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연속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에 회의 재적인원 3분의 2의 투표로 직권으로 해임을 선언할 수 있다.
- ⑤ 권리보호관은 지명권을 가진 행정청에 이를 통보한다.

- 제17조** ① 회의의 구성원은 다음의 각 업무를 할 수 없다.
-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직무를 수행하거나 위임을 받은 조직에 관한 심의의 참여.
 - 심의의 3년 내에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었거나 직무를 수행했거나 위임을 받았던 조직에 관한 심의의 참여.
- ② 회의의 구성원은 그들이 직·간접적 가진 또는 가지게 될 이익, 직무의 수행 및 수행하게 될 직무, 위임받은 사항 및 위임받게 될 사항에 대하여 권리보호관에게 통보한다.
- ③ 권리보호관은 이 의무의 규정을 감시한다.

제2장 권리보호관의 정보수단에 관한 규정 (제18조 내지 제23조)

- 제18조** ① 권리보호관은 피신청인인 모든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그는 청문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자를 청취할 수 있다.
- ② 피신청인인 자연인 또는 법인은 그의 업무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피신청인은 직원과 대리인이 요청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답변요청에 대해 응답하고, 소환에 응해야 한다. 소환장은 청문의 목적을 기재한다.
- ④ 권리보호관의 접수 후, 설명의 요구를 받은 자는 그들이 선택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상호참여한 청문회 조서가 작성되고 참석자에게 교부한다.
- ⑤ 권리보호관이 요청하는 때에는 각 장관은 통제기관의 권한 내에서 모든 검증과 심문을 지시한다. 그들은 후속조치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권리보호관은 국사원의 부원장 및 감사원장(le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es comptes)에 대하여 모든 연구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① 피신청인인 자연인 또는 법인은 권리보호관에 대하여 이유를 적은 요청에 따라 그의 임무 수행에 유용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전달한다.

② 권리보호관은 국방, 국가안보, 외교와 관련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가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정보를 비밀 또는 기밀성에 관계없이 수집할 수 있다. 수사와 및 지시 비밀은 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의료비밀 또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관계에 적용되는 비밀 정보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때에만 그에게 통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비밀이 적용되는 정보가 박탈, 학대, 신체적·성적·정신적 폭력에 관한 사유가 미성년자 또는 나이 또는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자에 관한 때에는 동의없이 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 정보가 본 조직법률 제4조가 예정한 권리보호관의 권한의 범위 내에 속하는 때에는, 권리보호관에 대하여 공개했을 정보의 비밀성을 위하여 형법전 제226-13조를 적용하여 직업적 비밀유지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소추할 수 없다.

⑤ 권리보호자에게 신고한 사람은 이를 이유로 보복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21조 ① 마지막 항을 제외하고 제18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요청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리보호관은 기간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이 그에게 응답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② 최고가 효력이 없는 때에는, 권리보호관은 가처분법원(le juge des référés)에 이유를 기재하여 그가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조치를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 I. ① 권리보호관은 다음 각 호를 수행할 수 있다.

1. 피신청인의 행정 또는 사적건물에서의 현장검증.
2.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 건물, 교통수단 및 이러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사무용 건물의 현장검증.

② 현장검증을 하는 때에는, 권리보호관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청취할 수 있다.

II. ① 관계행정청은 공법인의 행정건물에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가 예정하는 권한에 따른 현장검증에 대해 국방 또는 공공안전에 관한 중대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관계행정청은 권리보호관에 대하여 자신의 이의에 대한 소명을 제출해야 한다.

③ 권리보호관은 가처분법원에 대하여 이유를 기재한 신청으로 현장검증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검증은 이를 허가한 법원의 권한과 통제하에 이뤄진다. 법원은 개입이 이뤄지는 동안 행정건물에 대하여 방문할 수 있다. 언제라도, 법원은 검증의 중단 또는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III. ① 사소유 건물의 책임자는 방문 또는 현장검증에 앞서 그의 이익권에 대해

고지받는다. 그가 이 권리를 행사하였을 때에는, 방문 또는 현장검증은 국사원의 데크레로 정하는 요건에 따른 그 방문현장을 관할하는 민사법원 석방구금판사의 허가 선고가 있는 후에야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긴급성, 통제의 원인인 사실의 심각성 또는 문서의 파기 또는 변조의 위험 등이 이를 정당화 할 때에는, 방문은 석방구금판사의 사전허가를 통해 건물책임자에 대한 통지 없이도 이뤄질 수 있다. 이 경우, 장소의 책임자는 방문에 대해 이익할 수 없다.

② 방문은 장소를 관리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이를 허가한 석방구금판사의 권한과 통제하에 이뤄지며, 그는 그가 선택한 변호사와 대동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없는 때에는 통제를 진행하는 자의 휘하에 있지 아니한 2인의 증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③ 방문을 허가하는 명령은 판결원본만으로 집행력을 가진다. 판결문은 방문을 허가한 법원에 대하여 언제라도 방문의 정지나 종단을 신청할 수 있음을 기재한다. 판결문은 기간과 상소방법도 지시한다. 민사소송법전이 예정하는 규칙에 따라, 항소법원장에 대한 항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는 마찬가지로 방문의 진행에 대한 상소도 맡는다.

제23조 수사의 개시가 되었거나, 현행범을 구성하는 사실 또는 사법절차가 개시되었거나 소추가 진행 중인 사실과 관련하여 권리보호관이 접수를 받았거나 직권으로 착수한 때에는, 경우에 따라 마지막 항을 제외한 제18조, 제20조 및 제22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권리보호관은 관계법원 또는 검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권리보호관이 제4조제3호가 예정하는 권한에 따른 개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사항에 따른 사전 동의를 역시 받아야 한다.

- 제26조 및 제28조를 실행하기 위하여, 수사의 개시가 되었거나, 현행범을 구성하는 사실 또는 사법절차가 개시되었거나 소추가 진행 중인 사실과 관련하여 관계법원이나 검사에게.
- 제28조II를 실행하기 위하여, 수사의 개시가 되었거나, 현행범을 구성하는 사실과 관련하여 검사에게.

제3장 권리보호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 (제24조 내지 제36조)

제24조 ① 권리보호관은 청원의 대상이 된 사실이 그의 개입이 적당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② 그는 접수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유를 적시한다.

제25조 ① 권리보호관은 침해받은 당사자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고 그의 앞에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모든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그는 접수한 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형평에 적합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③ 관계당국이나 이해관계인은 권리보호관에 대하여 그가 정한 기간 내에 권고의 후속조치에 대해 통지한다.

④ 이 기간 내에 통지가 없거나 접수된 정보에 비추어 권고가 실행되지 않았다고 평가되는 때에는 권리보호관은 조치에 대한 피권고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그의 명령이 준수되지 않은 때에는, 권리보호관은 특별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권고자에게 전달한다. 권리보호자는 이 보고서와, 필요한 경우, 피권고자의 답변을 그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공개한다.

제26조 ① 권리보호관은 조정의 방식으로 그가 맡은 분쟁에 대한 우호적인 해결을 진행할 수 있다.

② 조정 중에 이루어진 조사결과와 수집된 진술은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합의의 공개가 필요하거나 공공질서의 측면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는 민사 또는 행정소송에서 제출되거나 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27조 권리보호관이 제24조의 요건에 따라 차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아동의 권리보호를 원용하는 자가 그의 개입을 요청하는 청원이라고 평가하는 때에는, 그는 국제적 차원의 사안인 경우에도 문서를 작성하고 그의 사례에 적절한 절차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제28조 I. 권리보호관은 청원을 제기한 자와 피청원자 사이에 그가 권고하는 조항에 따르는 화해를 제안할 수 있다.

II. ① 권리보호관이 형법전 제225-2조 및 제432-7조 및 노동법전 제L.1146-1조 및 제L.2146-2조상의 제재를 받는 차별이 성립하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소추의 대상이 아직 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는 위반자인 자연인에 대해서는 3,000유로를, 법인에 대해서는 15,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해적 제재금의 지급을 제안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피해자의 보상금에 충당된다. 제재금의 액수는 사실의 중대성, 위반자의 재원에 따라 결정된다.

② 권리보호관이 제안하고 가해자, 그리고 때로는 피해자 역시 합의한 화해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화해를 권고받은 자는 권리보호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음을 통보받아야 한다.

III. ① II에서 예정한 경우, 권리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화해 역시 제안할 수 있다.

1. 지정된 장소에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보도자료의 게시.
2. 통보를 위하여, 회사의 기업운영위원회 또는 직원대표에게 보도자료를 전송.
3. 관보 기타 언론간행물에 게재하거나 전자통신서비스를 이용을 통하여 보도자료의 배포.

4. 사내에서 결정의 의무적 공표.

② 게시 또는 배포의 비용은 가해자의 부담으로 하나, II가 예정하는 화해적 제재금의 총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는 없다.

VI. ① II 상의 화해의 이행을 위한 최고행위는 공소시효를 중단한다.

② 화해의 이행으로 소추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민사의 당사자가 형사법원에 직접소환을 하는 권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1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은 오로지 민사상 논점에 대해서만 선고한다.

③ 화해 제안을 거절하거나 승낙 및 검사에 의해 승인된 화해를 불이행하는 때에는, 권리보호관은 형사소송법전 제1조에 쫓아 직접소환의 방식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V. II 내지 V의 적용을 위한 방식은 데크레로 정한다.

제29조 ① 권리보호관은 그가 인지하고 제재를 정당화할 사유가 있어 보이는 사건에 대하여 징계권한이 있는 행정청에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② 이 행정청은 권리보호관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알리고,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결정의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가 정한 기간 내에 통보가 없거나, 수령한 통보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권리보호관은 특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항상의 행정청에 통보한다. 그는 이 보고서와, 경우에 따라서는 이 행정청의 답변까지 그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④ 전항은 헌법 제65조 마지막 전항에 예정한 바에 따라 사법관최고회의에 접수할 사건에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 ① 권리보호관이 행정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직업활동과 관련하여 제4조제3호상의 직접 또는 간접적 차별을 확인하거나, 행정청이 공공질서 및 자유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보전조치 또는 제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가 가진 정지 또는 제재의 권한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권리보호관은 그의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권리보호관이 접수한 청원이 사법부의 권한에 속하지 않고 법령의 조항의 해석이나 범위와 관련된 쟁점인 때에는, 그는 국사원에 견해를 구할 수 있다. 권리보호관은 이 의견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공개는 국사원의 데크레가 정하는 요건에 따른다.

제32조 ① 권리보호관은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법령의 변경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권리보호관은 그의 권한범위에 속한 모든 범위에 관한 정부제안법률안에 대하여 총리에게 의견을 줄 수 있다.

- ③ 권리보호관은 마찬가지로 그의 권한범위에 속한 모든 범위에 관한 쟁점에 대하여 총리, 하원의장 또는 상원의장에게 의견을 줄 수 있다.
- ④ 총리의 신청에 따라, 권리보호관은 그의 권한범위에 속한 분야에 대한 국제협상에서 준비 및 프랑스의 입장을 정하는데 기여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이 예정하는 경우에, 권리보호관은 1개월의 기간 이내에 그의 의견을 발한다.

제33조 ① 권리보호관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수 없다.

- ② 민사, 행정 및 형사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권리보호관을 초청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견해를 밝히도록 할 수 있다. 권리보호관은 스스로 법원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서면 또는 구두로 밝힐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법률상 청문이다.
- ③ 제28조 II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권리보호관에게 그가 인지한 사실이 중죄 또는 경죄를 성립시키는 것으로 보일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통보한다. 그는, 경우에 따라 제26조의 적용에 따른 조정절차가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 ④ 검사는 권리보호관에 대하여 신고에 대한 후속정보를 통보한다.
- ⑤ 권리보호관은 민법전 제375조가 예정하는 교육지원조치를 초래할 미성년자에 관한 사건 또는 소송 중인 관련 미성년자로부터 얻은 모든 정보를 법원에 대하여 알린다.

제34조 ① 권리보호관은 그의 각 권한의 범위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소통 및 정보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권리보호관은 이러한 목적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한다. 그는 연구용역과 연구의 수행을 조정한다. 권리와 평등을 증진을 목표로 하는 구상과 적용을 추진하는 모든 공공과 민간조직을 독려하고 보조한다. 그는 이 분야의 모범사례를 선별하여 촉진한다.

제35조 권리보호관은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을 담당하는 기관의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해 지역 행정청에 제출한다.

제35-1조 (2022. 3. 21. 법률 제2022-400호 제3조로 신설) I. 투명성, 부패근절 및 경제생활의 현대화에 관한 2016. 12. 9.자 법률 제2016-1691호제6조 I 이 의미하는 모든 내부고발자는 권리보호관에게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 II. 그에게 접수된 신고가 그의 권한에 관련된 때에는, 권리보호관은 이를 수리하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이를 신고자에게 회신한다. 국사원의 데크레는 연합법 위반 고발자 보호에 관한 2019. 10. 23.자 유럽의회 및 위원회의 제2019/1937호 지침이 예정하는 요건에 따라 이 절차에 관한 기간 및 비밀보장에 관한 규정한다.

Ⅲ. 상기 2016. 12. 9.자 법률 제2016-1691호 Ⅱ 제1호상의 다른 행정청의 관할에 속하는 접수가 있는 때에는, 권리보호관은 고발자에 대해 이를 안내한다. 어떠한 행정청의 관할에도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들 중 다수의 권한에 중첩되는 내용인 때에는, 권리보호관은 행정청, 행정 또는 조직 중 이를 가장 잘 아는 곳으로 안내한다.

Ⅳ. ① 권리보호관은 상기 2016. 12. 9.자 법률 제2016-1691호 제6조 및 제8조가 정한 요건에 비추어 내부고발자의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의견제시를 위해 모든 자에 대한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

② 권리보호관은 마찬가지로 법령이 예정하는 내부고발자의 위반신고 및 보호에 관한 기타 조항이 예정하는 보호를 누릴 요건을 그 자가 갖추었는지 대해 의견제시를 위해 모든 자에 대한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

③ 본 Ⅳ 전2항의 의견제시는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6개월 기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제36조 Ⅰ. 권리보호관은 피신청인에 대해 통지한 이후에, 그의 의견, 권고 또는 결정, 필요한 경우, 그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피신청인이 한 답변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Ⅱ. ① 권리보호관은 매년 대통령, 하원의장 및 상원의장에게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제출한다.

1. 제4조에 열거된 각 권한범위에 관한 주제별 활동을 첨부한 일반적인 활동에 관한 보고서. 이 보고서는 6. 1. 전에 제출된다.
2. 국제아동의 날과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해 작성한 보고서.

② 또한, 권리보호관은 2년에 한 번씩 대통령, 하원의장 및 상원의장에 대하여 고발을 처리하고 접수하기 위하여 관계행정청에 정보가 전달된 때로부터 이뤄지는 내부고발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③ 본 Ⅱ의 제1항제1호 및 제2호 및 제2항상의 보고서는 공개되며, 권리보호관이 하원 및 상원과 송부해야 하는 주제가 된다.

Ⅲ. 권리보호관은 마찬가지로 대통령, 하원의장 및 상원의장에게 기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공개된다.

제4편 권리보호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 내지 제38조)

제37조 ① 권리보호관은 해외에 거주하는 프랑스인을 위해서뿐 아니라 영토 전체에 대해 자신의 권한하에 있는 행정관(délégué)을 선임할 수 있으며, 그는 그의 지리적 관할의 범위 내에서, 신청을 조사하고 접수된 문제의 해결에 참여하며, 제34조제1항상의 행위 또한 할 수 있다. 구금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본 조직법률 조항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각 수용시설마다 1인 또는 수인의 행정관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권리보호관은 직원을 포함한 행정관에게, 마지막 항을 제외한 제18조, 제20조 및 제22조 상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의 행정관과 직원은 거소지의 항소법원의 검사장으로부터 특별하게 권한을 부여받는다.
- ③ 선서한 권리보호관의 직원들은 검사로부터 차별범죄, 특히 형법전 제225-3-1조가 적용되는 사실에 대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 ④ 본조 제3항 및 제4항상의 자격부여는 국사원이 데크레로 정한 요건 및 방식에 따라 발급된다.

제38조 ① 권리보호관, 그의 보좌관, 회의의 그 밖의 구성원, 행정관, 기타 권리보호관의 권한하에 있는 모든 자는 의견, 권고, 이행명령 및 본 조직법률이 예정하는 보고서에 대한 예외를 유보하고, 그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 행위 또는 정보에 관하여 직업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② 그러나 권리보호관은 아동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그의 법정대리인과 아동의 이익을 위하여 개입할 수 있는 행정청에 통지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의 동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인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재가 권리보호관의 권한으로 발행된 문서에 기재되지 않는다.

제39조 < 2017. 1. 20.자 법률 제2017-55호로 삭제 >

제5편 최종 조항 (제40조 내지 제44조)

제40조 1958. 11. 7.자 오르도낭스 제58-1067호 제4조를 수정함

제41조 1994. 2. 5.자 법률 제94-100호 제6조를 수정함

제42조 다음의 조항들을 수정함

- 선거법전 제LO130조 수정.
- 선거법전 제LO176조 수정.
- 선거법전 제LO194-2조 신설.
- 선거법전 제LO230-3조 신설.
- 선거법전 제LO319조 수정.
- 선거법전 제LO340-1조 신설.
- 선거법전 제LO489조 수정.
- 선거법전 제LO516조 수정.
- 선거법전 제LO544조 수정.

제43조 I 내지 III 및 V. 다음의 조항들을 수정함

- 2004. 2. 27.자 법률 제2004-192호 제109조
- 1999. 3. 19.자 법률 제99-209호 제195조
- 1961. 7. 29.자 법률 제61-814호 제13-2조
- 2004. 2. 27.자 법률 제2004-192호 제7조
- 2004. 2. 27.자 법률 제2004-192호 제14조
- 1999. 3. 19.자 법률 제99-209호 제6-2조
- 2010. 7. 23.자 조직법률 제2010-837호 별표조문

IV. 뉴벨-칼레도니아(Nouvelle-Calédonie)에서 본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는 뉴벨-칼레도니아, 프로방스(province) 및 꼬뮌(commune)을 지칭한다.

제44조 I. 본 조직법률은 공포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이 날로부터, 권리보호관은 제4조 제1호의 임무를 수행하고, 공화국조정자(le Médiateur de la République)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II. ①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임무와 관련해서는, 본 조직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2개월 이 지나는 첫 번째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제2항의 “그의 보좌관들”이라는 단어.
- 제3조제1항과 마지막 항의 전항의 “ 및 보좌관들의 그것들”이라는 단어.
- 같은 제3조제2항의 “또는 보좌관”이라는 단어.
- 제3조 마지막 항의 제1문의 “또는 그의 보좌관들의 1인처럼”이라는 단어.
- 제4조 및 제5조의 제2호 내지 제4호.
- 제5조 마지막 항.
- 제6조제2항의 끝에,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상의 권한에 따라 그것이 발표되었을 때” 라는 단어를 추가.
- 제8조의 마지막 문장에 “그에게 아동의 우월한 이익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것과” 라는 단어를 추가.
- 제10조의 두 번째 문단에서, “단, 같은 제4조제3호상의 권한을 제외하고”라는 단어를 추가.
- 제11조 내지 제17조까지.
- 제22조제1항의 “제3호까지”.
- 제23조의 제1항 마지막 문장과 마지막 두 항.
- 제27조, 제28조의II 내지 V 및 제30조.
- 제33조의 마지막 항.
- 제34조제2항의 마지막 두 문장.
- 제35조.
- 제36조 II 제2호 및, 동 II의 마지막 항의 “ 및 제2호”.

- 제37조 마지막 전항 및 제37조의 마지막 항의 “과 네 번째”.
 - 제38조제1항, “그의 보좌관들, 다른 회의의 기타 구성원들”이라는 단어.
 - 제39조에 “그의 보좌관들, 다른 회의의 기타 구성원들에”라는 단어.
 - 제42조제3항제1호의 “와 보좌관들”이라는 단어.
 - 같은 제42조제6호에서, 선거법전 제LO489조, 제LO516조 및 제LO544조.
 - 제43조I “국가보안윤리위원회, 아동보호관, 프랑스차별철폐와평등신장을 위한 고등기구의”라는 단어.
 - 같은 제43조 II 제2호에 “및 아동보호관”이라는 단어.
 - 프랑스 폴리네시아의 자치 지위에 관한 2004. 2. 27.자 조직법률 제2004-192호 제109 조제5호의 아동보호관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상기 II 의 제3호.
 - 같은 제43조III제1호의 “아동보호관, 프랑스차별철폐와평등신장을 위한 고등기구의”라는 단어.
- ② 본 조직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는 첫 번째 날부터 공화국조정자, 아동보호관, 국가보안윤리위원회, 프랑스차별철폐와평등신장을 위한 고등기구의 각 활동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는 권리보호관이 승계한다.
- III. ① 권리보호관이 승계하는 행정청에 속한 파견인의 파견 및 공법상 계약직직원의 계약은 권리보호관과 사이에 계속된다.
- ② 공화국조정자, 아동보호관, 국가보안윤리위원회, 프랑스차별철폐와평등신장을 위한 고등기구에 의해 개시되었고, I 및 II 제1항의 각 시행일자까지 종료되지 않은 절차는 권리보호관에 의해 계속된다. 이를 위해, 공화국조정자, 아동보호관, 국가보안윤리위원회, 프랑스 차별철폐와평등신장을 위한 고등기구에 의해 유효하게 완료된 행위는 권리보호관에 의해 유효하게 완료된 것으로 본다.
- ③ 본 법률은 국가의 법률로써 실행한다.

2011년 3월 29일 파리에서 작성.
니콜라스 사르코지 공화국 대통령

GLOBAL LEGAL ISSUES

프랑스법상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도입과 현황 및 지원체계

황재훈

프랑스 파리13대학교 법학박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변호사



발행일 2022. 6. 30. 발행인 김계홍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15 한국법제연구원
Tel. 044)861-0300 Fax. 044)868-9913

ISBN 979-11-92325-08-8(95360)

